2012년 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미, 한중 FTA 와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의 문제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우 상 호

외 교 통 상 통 일 위 원 회

목 차

머리말 ····· 5

Ⅰ. 한미 FTA의 법률적 성격

1. 서론 ····· 7
2. 한미 FTA의 법률적 문제점 ····· 8

Ⅱ.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1. 행정부의 정보독점과 기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ISD 소송 ····· 14
2.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의 역할 ····· 18

Ⅲ. 미국과 연관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사건 요약 ····· 22
2. 사건의 분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6

Ⅳ.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ISD 소송

1. 론스타 ····· 46
2. 추가 소송과 대책 ····· 47
3. 지방자치단체와 ISD ····· 49

Ⅴ. 한중 FTA와 ISD

1.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라도 한미 FTA의 ISD는 필요하다는 주장의 비합리 ····· 53
2. 한중 FTA 체결시 대(對)중국 투자산업의 영역과 ISD ····· 55

별첨 _ 론스타와 대한민국 분쟁중재의향서, 적요서(영문, 한글본) ····· 59

머리말

바야흐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의 시대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라는 괴물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ISD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공공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미 FTA의 재협상 논의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ISD 소송에 대한 대비 또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ISD는 우리의 공공보건, 복지, 환경, 노동,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권한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그룹에서 '한미 FTA의 ISD조항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21일(현지시각)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보내오면서 ISD의 위협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정책자료집 발간 목적은 앞으로 들이닥칠 ISD의 위협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 ISD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이다.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한 정부와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려는 시민단체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정책자료집이 ISD를 바라보고 이에 대처하는 대에 길잡이가 되길 기원한다.

2012년 10월 5일

국회의원 **우 상 호**
미국변호사 김익태(법과사회 연구소장)

I. 한미 FTA의 법률적 성격

1. 서론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은 신자유주의 경제제도하의 특징적인 모델이다. 기존의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조약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드러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탄생한 FTA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이 시작한 FTA를 이제는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나 우리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무조건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안이 있다. FTA는 그 성격상 양자 간 협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FTA는 상이한 국가 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며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개개의 FTA는 조금씩 다른 법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국제조약과 FTA와의 차이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FTA는 기존의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성격을 보완해 주는 측면도 있으나, WTO의 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교묘하게 우회하는 측면이 있다. WTO의 전신은 알려진 바와 같이 1944년에 만들어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적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이다. GATT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포함하여 총 여덟 번의 회의를 마친 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를 탄생 시켰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회원국을 둔 이러한 국제기구의 한계는 시작부터 내정돼 있었다. 일단은 이 모든 작업을 주도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무역정책에 관한 국가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자국의 개별적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최초의 국제경제기구인 WTO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직접 국가간의 경제조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WTO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바로 그것이다. FTA의 기안자는 미국이며 최초의 실험자 또한 미국이다. 미국은 주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자국이 만들어낸 FTA를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이다. 국제기구인 WTO를 놔두고 미국이 따로 만든 개별적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다. 법적으로는 WTO에서 합의한 중요한 원칙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FTA는 WTO에 대해 예외적인 성격이 있다.

즉, WTO의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최혜국대우에 대한 합의를 FTA라는 개별협상을 통해서 살짝 비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20%관세를 10%로 낮춰줬을 경우, 이러한 인하된 관세를 다른 모든 국가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 하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캐나다와 FTA를 맺으면서 10%이던 관세를 0%로 낮췄다고 해서 다른 모든 WTO국가들에게 이를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WTO체제 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예외적인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인다.

2. 한미 FTA의 법률적 문제점

FTA의 일반적인 특징이 기존의 투자협정과 무역협정을 조합한 WTO에 대한 예외적인 개별국가간의 협정이라고 논할 때, 한미 FTA의 특징은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의

전면화 그리고 미국식 법제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다.

(1) 투자자 국가 소송제 (Investor State Dispute:ISD)

먼저 ISD를 살펴보면, 이는 기존의 양자가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에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FTA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FTA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ISD는 1960년대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구 식민지 자본을 국유화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자본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에 투자한 자금과 설비가 식민 국가들의 독립과 함께 국유화 당하는 경험을 했던 자본국이 이러한 직접수용에 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마련한 법적 안전망이었다.

실례로, UN 보고서에 의하면, 구 식민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했던 1960년부터 해마다 외국투자 재산에 대해서 국유화 하는 건수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며 1975년에는 연 평균 15건 이상으로 상승하였다.[1] 양자 간 투자협정인 BIT가 활성화 되고 그 안에 ISD를 두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ISD 관련 소송은 대한민국이 국제투자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ICSID) 회원국이 된 1966년 이후 몇 십 년 동안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좋을 만큼 미미했다.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분쟁을 힘의 외교로 해결하던 시대였고, 또한, 이러한 투자자 국가제소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단순히 관세 철폐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인이 국가를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이라는 ISD 제도를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2011년 11월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BIT-FTA 체결 증가로 2000년 이후 ISD 제소가 급증했다고 분석한다.[2] 자료에서 인용한 UNCTAD의 “2011년 세계투자보고서” 도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Key Issues, at 7, UN. Doc. UNCTAD/ITE/IIT/2004/10 (2004).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 관련 투요 분쟁 사례및 시사점,” 2011년 11월 21일, Vol 11, No. 30.

1993년까지 그 존재가 미미하던 ISD 소송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은, 1994년이며, 급증하기 시작한 때는 1996년이다. 바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북미자유협정(NAFTA)을 체결한 시점이다.

그림 1. ISD연간 발생 건수 및 누적 건수 (1987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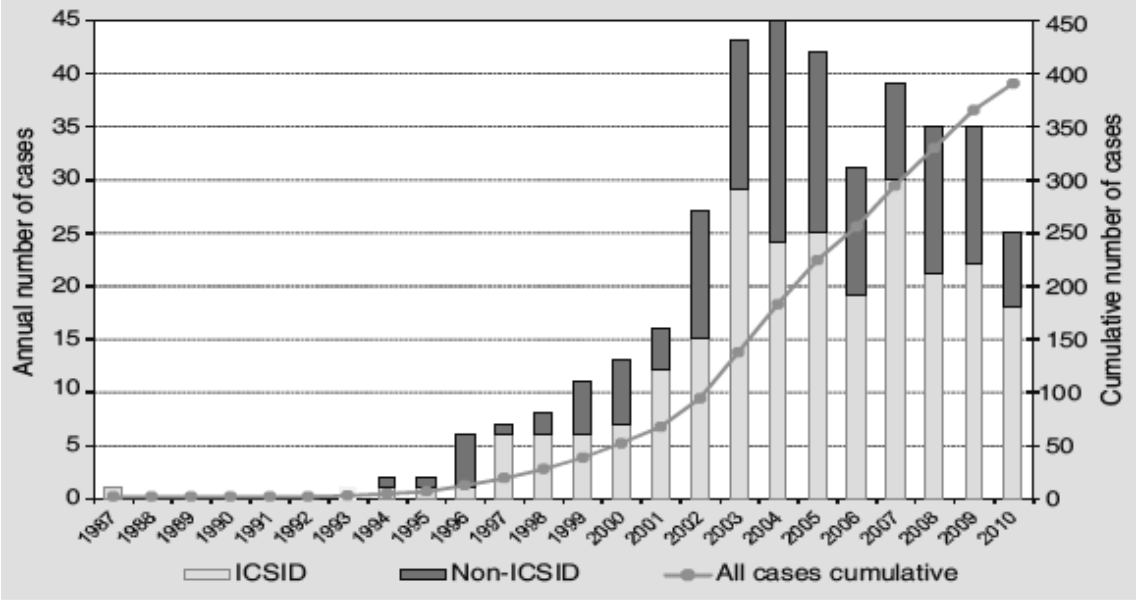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 관련 투요 분쟁 사례및 시사점," 2011년 11월 21일, Vol 11, No. 30.에서 재인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조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 때문에 ISD 소송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ISD 소송은 ICSID로 몰리기 시작했다. 앞에서 인용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중재기관으로 ICSID, UNCITRAL, SCC, ICC 등이 있는데, 이중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ICSID가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3] 동보고서는 UNCTAD에서 발표한 2011년 ISD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하여 밝힌 2010년 말 현재 ISD는 총 390건이며, 이중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사건은 109건으로서[4]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위의 책, p. 4.
4) 위의 책, p. 3-4.

하지만, 최근 불거진 론스타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ISD 소송을 경우를 보면, 미국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의거하여 마치 벨기에 투자자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미국투자자가 제기한 ISD의 소송은 109건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의 두 번째 특징인 미국식 법제의 이식은 이러한 ISD 소송의 양적 증가와 맞물려 있다.

(2) 한미 FTA를 통한 미국식 법제의 이식

미국이 최초로 FTA와 ISD를 실험했던 장은 앞에서 설명한 북미자유협정(NAFTA)을 통해서이다. 미국으로서도 처음 실험해 보는 양자 간 지역적 자유무역인 NAFTA는 미국이 이후 어떻게 FTA를 개정해 나갈지에 대한 지표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NAFTA를 체결한 후, 캐나다와 멕시코의 투자자들이 미국을 제소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캐나다 투자자가 1998년 제기한 로웬(Lowen)사건이나 미국 주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1999년 캐나다 투자자가 제소한 사건인 메타넥스(Methanex)가 그것이다. 특히 메타넥스 사건이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메타넥스가 생산하는 화학물질이 미국의 환경법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발생했다. 비록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미국은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자아 낼 수 있는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를 우려하기 시작했다.[5)]

이어 미국 내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미국통상대표부는 ISD 관련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재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2006년 투자자에 대한 국가의 자율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NAFTA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자국법을 FTA 조항에 그대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분쟁의 발생 시 자국법을 그대로 이전한 FTA 조항에 대한 해석의 지침까지 제시하였다.

5) David Gantz,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Central America -Dominican Republic-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Review, Vol.30, p.348.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펜센트랄 사건(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 v. New York City, 438 U.S.104(1978))을 통하여 간접수용에 관한 미국의 사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에 소재한 그랜드 센트럴(Grand Central Terminal)이라는 오래된 기차역사의 소유주가 역사 위로 5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자, 뉴욕시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소유주는 뉴욕시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서 미국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기에 이르렀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간접수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뉴욕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이 사건을 통하여 미국연방대법이 간접수용에 대한 기준을 판례법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이후 미국의 사법부의 간접수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자국의 간접수용에 대한 기준은 자국법이며 자국법에 익숙한 미국의 투자자를 위하여 미국은 자국과 체결하는 모든 FTA에서 간접수용에 관한 정의(definition) 조항에 펜센트럴 사건에서 설시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한미 FTA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간의 협약인데 일방국의 법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록 자국의 판례법을 그대로 이식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중재재판소에 ISD 소송을 제소할 경우, 미국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여타의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법이 판결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배경을 안고 만들어진 문구가 바로 한미 FTA 서문에 들어가 있는,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라는 모호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배경은, 2001년부터 미국의 대외통상법 개정을 주도한 뉴욕 주 출신의 민주당 하원의원 찰스 랜걸이 2008년 하버드대학에서 발간하는 법제 관련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NAFTA와 관련한 분쟁사건에서 문제가 있는 판결들이 다수 내려졌다. 그래서 2001년 나는 미국의 통상조약에서 투자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생략) 그래서 2001년 NAFTA를 개정하였다. (생략) 그래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생략) 그래서 새로운 FTA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서문에 넣게 되었다. (이후는 우리의 서문에 있는 문장). 이 문구는 투자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내용이다.

만약에 중재재판부가 FTA의 투자조항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고려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째는 FTA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투자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거나 더 낮은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이다. 서문의 이 문구는 재판부가 첫 번째 해석을 하는 것을 봉쇄할 것이다."[6] 이런 이유 때문에 한미 FTA의 서문에 포함되어 있는 모호한 조항은 그리하여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FTA의 서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한 차례 NAFTA를 개정하였고, 이후에 체결하는 FTA의 서문에는 앞에서 언급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한 해석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판례법이 그대로 사용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환경이나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도 미국의 수준으로 지켜가면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미국식 법제로 바꾸었으며 오랜 사법전통 속에서 축적한 풍부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해석의 기준까지 미국식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만들

6) Charles Rangel, "Moving Forward: A New, Bipartisan Trade Policy that Reflects American Values,"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Vol 45, P.407-8 (2008)

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식 판례법들이 FTA의 조항에 그대로 이전되어 있으며, 그렇게 이식된 미국식 법제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관련 분쟁에 있어서 미국에게 유리한 판결이 가능할 것을 예측하게 하기 때문이다.

II.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1. 행정부의 정보독점과 기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ISD 소송

FTA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의 FTA 논의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비공개적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채 모든 정보를 오직 협상주체만이 독점하는 양상은 아니었나 생각한다. 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공개만을 한 채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은 아니었는지 한 번 돌아볼 일이다.

이러한 정보의 독점은 과거의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4년 콜트사가 제기한 ISD 소송에 대한 정보의 은폐이다.

(1) 1984년 대한민국이 제소된 ISD 소송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있을 때 마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이전에도 ISD 소송을 당하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ISD 소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1984년 ICSID 설립이후 제18번째로 ISD 피소국이었다. 제소자는 미국의 무기회사인 콜트사이다. 사건명은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Firearms Division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다. ICSID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그림 1. ICSID 홈페이지의 사건기록 www.icsid.worldban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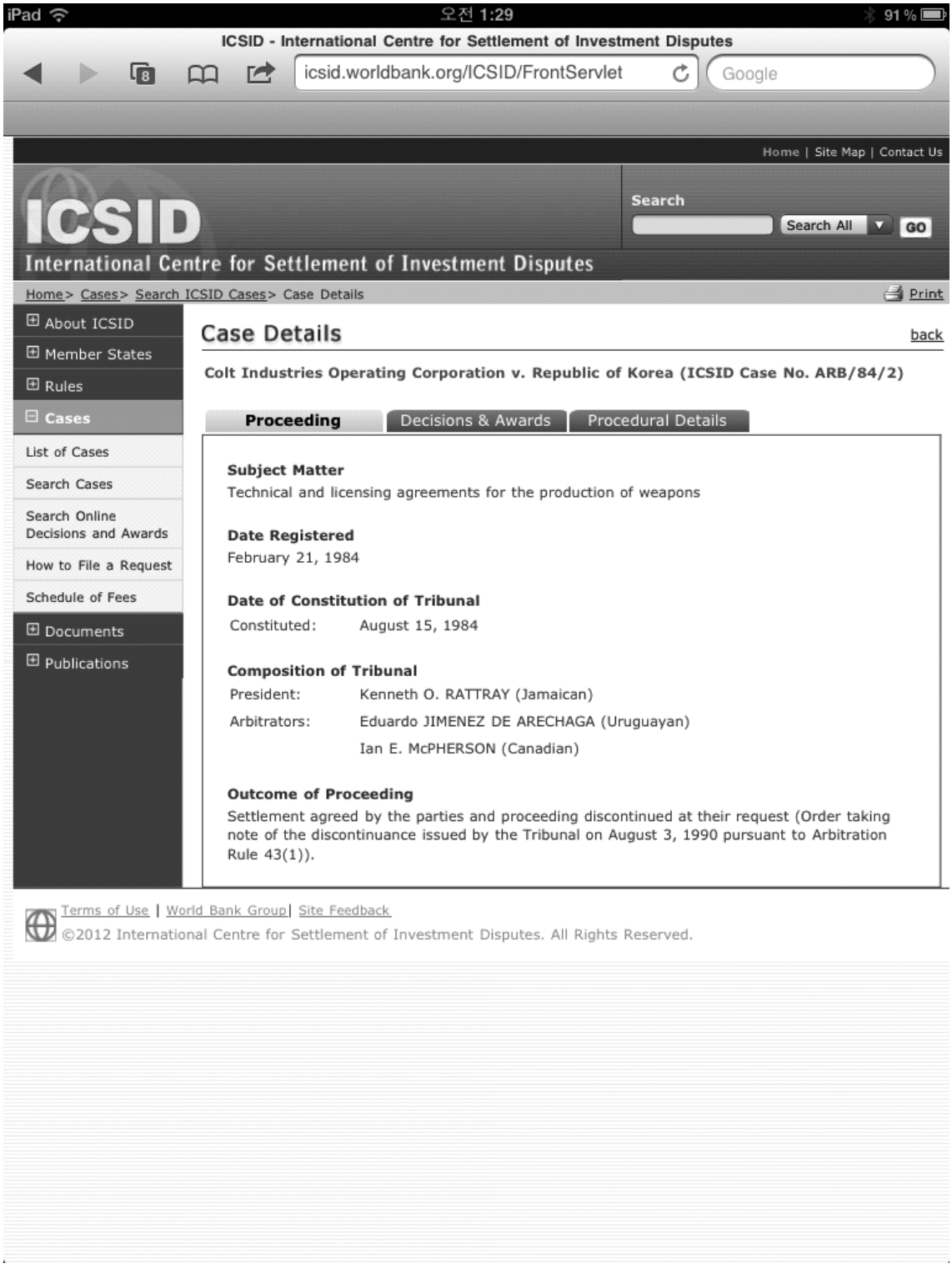

1984년에 시작하여 1990년 합의로 끝난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원에 의해 ICSID 홈페이지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2) 행정부의 정보은폐

2012년 7월 18일 외교통상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자신들이 소관부서가 아님을 들어 법무부로 신청을 이관하였고, 이어 법무부는 7월 29일, 신청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답을 제공했다.

한편 2012년 8월 12일 이 문제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국이 이전에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최근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송 당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콜트사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콜트사에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졌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자 외교통상부는 그 다음날 2012년 8월 13일 대변인 이름으로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콜트사의 중재는 무기 생산 관련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일종의 상사분쟁으로 투자보장협정(BIT)이나 FTA 등에 근거한 ISD가 아님. 통상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상사계약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외형이 투자자-국가간 분쟁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상사분쟁이지 ISD가 아님. 참고로 상기 분쟁 제기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한 달 전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니라던 외교통상부가 언론보도가 나니 즉시 상세하게 사건에 대해 해명을 했다. 해당부서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정보의 독점이 빚은 해프닝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면 정보공개 요

청에 대한 행정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3) 외교통상부의 반박성명에 대한 검토

위의 성명에서 밝힌 반박자료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ICSID라는 국제투자중재재판소는 ICSID 협약 제1조 제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 즉 ISD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7] ISD의 재판 관할권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무역 분쟁은 WTO에서 담당하며 기타 국제통상에 관한 분쟁 또한 기타 상이한 여러 국제 중재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ISD는 특별히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사건을 관할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기구이다.

또한 투자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 하다. 투자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이나 설비투자 이외에도 기술이전이나 사용 또한 투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ICSID관할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ISD는 FTA나 BIT를 통해서만 제기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니다. BIT나 FTA의 급속한 확대를 통하여 ISD 소송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지 ISD가 BIT나 FTA의 전유물은 아니다. 일반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ICSID를 중재재판소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ICSID를 중재재판소로 지정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자와 국가간의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

또한 외교통상부 성명에서 밝힌 상사분쟁이라는 것은 별종의 특별한 분쟁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일 뿐이다. 상사계약이라 함은 상업적인 계약 즉 commercial contract이며 상사분쟁은 commercial dispute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분쟁이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 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밝힌 상사중

---

7) Chapter I,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Section 1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Article 1
(1) There is hereby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ereinafter called the Centre).
(2) The purpose of the Centre shall be to provide facilities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재의 당사자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의 경우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이면 충분하고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CSID 중재의 경우에는 협약 규정에 따라 일방당사자는 체약국이거나 또는 그 하부조직(constituent subdivision), 기관(agency)이어야 하고, 상대방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모두 체약국이거나 또는 모두 투자자인 경우에는 ICSID의 관할이 미치지 않아 중재신청은 접수가 거부된다.” 8)

결론적으로 1984년 콜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한 ISD 소송이며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제소한다면 이는 두 번째 ISD 소송이 될 것이다.

(4) 정보 공유를 통한 ISD 소송 대비

정보를 감추려는 행위는 정보가 공개되면 유리하지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에 국민들 모르게 ISD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감춰야만 할 대단한 사건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과거의 사건을 공개하고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ISD 소송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기존 소송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협상당사자인 외교통상부만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만 이후에 진행할 추가 FTA 협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2.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의 역할

8) http://www.kcab.or.kr/html/kcab_kor/monitering/moni_04_02.htm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입법부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소지가 있다.

(1) 입법부와 입법권의 제한 가능성

행정부의 비공개적인 사업진행 방식은 추후 책임소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는 공공정책 입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권 제한이라는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ISD 소송으로 인해 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례로 2011년 호주에서 반흡연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흡연피해 사진을 담뱃갑에 삽입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자 말보로를 만드는 미국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Phillip Morris)가 호주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했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호주 입법부의 행위가 ISD 소송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

그림 2. 호주에서 제안된 새로운 담뱃갑의 디자인.
(흡연피해 사진을 전면에 부착하고 담배의 브랜드 이름과 제조사명은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하단에 배치하였다)

(자료출처: 로이터)

동 사건은 미국과 호주사이에 맺은 투자조약에는 ISD 조항이 없는 이유로

필립모리스사가 자사의 홍콩지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홍콩과 호주의 투자협정에는 투자유치국의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명문상의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호주정부에게 보다 불리한 사건이다. 하지만 명문화 되었다고 해서 꼭 유리하게 해석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유의미성은 명문화의 유무를 떠나서 국회의 국민건강에 관한 정당한 입법권이 ISD 소송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ISD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입법부의 입법권한이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에 의해 제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부는 기존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가능한 입법권 제한 사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법부와 사법주권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이 ICSID의 판결 앞에서 무력화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국제투자중재재판소인 ICSID에 ISD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단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주권의 침해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미국식 법제의 이식을 통하여 좀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 서로의 법체제가 다른데,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의 국내법이 FTA 협정문에 그대로 삽입되고 이는 협정발효 후에 고스란히 우리의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법주권이 절차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 수용(expropriation)의 문제를 들어보자. 한미 FTA에는 우리법제에는 없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미국은 간접수용이 앞서 인용한 펜센트럴(Penn Centra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로서 이미 확립이 되어 있고 이 해석은 한미 FTA에 그대로 이식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간접수용에 관한 법적기준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판례법 체제인 미국과 성문법 체제인 우리의 법체계가 다른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제한 지정과 관련하여 내린 판결 정도가 전부이다. 하지만 사법주권과 관련하여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 이다. 헌법재판소에 2001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면서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러한 판단이 간접수용과 유사한 성격의 판결로서 우리나라의 간접수용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 보자. 그런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며 ICSID에 제소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ICSID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투자자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을 명령하였다고 한다면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이 법률을 심판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ICSID는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의미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려할 만한 사법주권의 침해요소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 주요내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린벨트 지정, 학교지역 내 유흥업소허가 금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시민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이다"[9] 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추가로 분석하겠지만 명문화된 예외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되는 경향성이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개연성만을 지닌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인다.

9) "한미 FTA 주요내용" p. 101

간접수용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앞서 예를 든 호주의 반흡연법의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필립모리스사가 강력한 경고문 대한 강제조항이 간접수용에 이른다고 주장할 경우, 한국의 사법부는 이에 대한 법적해석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사건이 국내에서 제기될 경우,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 심판하게 된다. 이후에 ICSID의 중재재판 결정과 한국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상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ICSID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체결에 즈음하여 이러한 새로운 법적 개념에 대하여 학계와 사법부가 신속하게 새로운 법적해석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 미국과 연관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사건 요약

미국에 위치한 민간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www.citizen.org)이 2012년 1월 발표한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발생한 ISD 사건을 분석한 자료(Table of Foreign Investor-State Cases and Claims Under NAFTA and other U.S. Trade Deals)를 발표했다. 아래의 표는 동 자료에 대한 부분적 요약에 기초한 번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NAFTA 사건

투자자(원고)/ 제소일	중재재판부	청구액 (미화/ 달러)	결과	내용
로웬 (Lowen) 1998년 10월	ICSID	$725 milion	기각	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은 최초의 NAFTA 사건.

30일				캐나다 장의(葬儀) 회사가 미시시피 주법원의 배심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소한 사건. 2003년에 기각당함
몬데브 (Mondev) 1999년 5월 6일	ICSID	$50 million	기각	지자체의 면책권과 토지사용정책에 관한 메사추세츠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부동산 회사의 사건. 2002년 10월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 당함.
메타넥스 (Methanex) 1999년 6월 15일	UNCITRAL	$970 million	기각	가솔린 첨가제인 MTBE의 원료인 메타놀 생산업체인 캐나다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의 식수원오염 방지를 위한 가솔린 첨가제 사용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2005년 8월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 당함
에이디에프 그룹 (ADF Group) 2000년 2월 29일	ICSID	$90 million	기각	버지니아 주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미국제품사용의무조항 (Buy America Law)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철강회사의 소송. 2003년 1월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
캔포 (Canfor) 2011년 11월 5일	UNCITRAL	$250 million	병합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목재회사의 소송. “소프트우드 목재”사건과 병합
케낵스 (Kenex) 2002년 1월 14일	UNCITRAL	$20 million	재판미개시	캐나다 대마(大魔)제품회사가 당 제품의 수입을 형법으로 금한 미국의 식품의약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제임스 베어드 (James Baird) 2002년 3월 15일)		$13.58 million	재판미개시	미국의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투자자의 소송
도만		$513	재판미개시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Doman) 2002년 5월 1일		million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목재회사의 소송.
팀버 (Timber Corp.) 2002년 5월 3일	UNCITRAL	$200 million	병합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목재회사의 소송. "소프트우드 목재"사건과 병합
온타리오 (Ontario Limited) 2002년 9월 9일		$38 million	재판미개시	플로리다주가 사건 수사중 압수한 빙고사업장과 재무장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한 캐나다 회사의 소송
터미널 포리스트 (Terminal Forest Products Ltd.) 2003년 6월 12일	UNCITRAL	$90 million	병합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목재회사의 소송. "소프트우드 목재"사건과 병합
글래미스 골드 (Glamis Gold Ltd.) 2003년 7월 21일	UNCITRAL	$50 million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한 인디언 성지(聖地) 지역 부근의 금광원상복구법에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금광채굴업자의 소송.
그랜드 리버 엔터프라이즈 (Grand River Enterprises et. al) 2003년 9월 15일	UNCITRAL	$340 million	기각	미국검찰의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촉발된 1998년 "담배소송합의" 사건으로 담배회사가 건강의료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한 조치에 대해 캐나다 담배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
캐나디언 캐틀맨 (Cadanian Cattlemen for Fair Trade) 2004년 8월 12일	UNCITRAL	$235 million	기각	2003년 5월 캐나다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자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자 캐나다 축산업자들이 소송을 제기. 2008년 1월 캐나다 소고기 수출업자들은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기각당함.
소프트 우드	ICSID		종결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럼버 (Softwood Lumber) 병합사건 2005년 9월 7일				이의를 제기한 캐나다 목재회사의 소송. 병합된 사건 중 대부분은 미국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서 종결됨. 또한 WTO와 NAFTA 국가간 협의 채널을 통해서 다루어짐.
돔타르 (Domtar Inc.) 2007년 4월 16일	UNCITRAL	$200 million	재판미개시	미국의 반덤핑 판정으로 벌금을 냈던 캐나다 목재회사가 양국 간 목재 수출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벌금 반환을 위해 제기한 소송.
아포텍스 (Apotex) 2008년 12월 12일	UNCITRAL	$8 miilion	계류	미국의 파이저 제약회사의 제품인 항우울증 치료제 졸로프(Zolof)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 캐나다에서 복제약을 판매하기 위해 캐나다 제약회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해석을 거부하면서, 복제약의 판매 시점을 경쟁회사에게 빼앗긴 캐나다의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
캔카 (Cancar Mexican Trucks) 2009년 4월 2일	UNCITRAL	$6 million	계류	미국정부가 멕시코 트럭의 미국입국을 거부하고 아울러 멕시코 운송회사의 미국내 지사 설립을 금지한 조치에 멕시코 운송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
아포텍스 (Apotex) 2009년 6월 6일	UNCITRAL	$8 million	계류	복제약 생산을 위해 미국 식품위생국에 캐나다 제약회사가 제출한 신청이 거부되자 이의를 제기한 소송
세멕스 (Cemex) 2009년 9월		알려진 바 없음	계류	주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채굴한 금속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텍사스 주정부가 멕시코 시멘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멕시코 회사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의사 (Notice of Intent)를 밝힘.

캐나다를 상대로 제기한 NAFTA 소송

시그나 (Signa) 1996년 3월 4일		$3.65 million	철회	멕시코 복제약 회사가 캐나다 정부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에틸 (Ethyl) 1997	UNCITRAL	$250 million	**합의: 에틸사 승소, $13 million**	미국 화학회사가 캐나다 정부가 가솔린첨가제 MMT의 판매를 환경을 이유로 금하자 제소한 사건. 캐나다 정부는 조치를 취하하고 $13 million과 소송비를 지불
에스디 마이어스(S.D. Myers) 1998년 7월 22일	UNCITRAL	$20 million	**에스디마이어스 승소: $5 million**	캐나다 정부가 다자가 국제환경협약의 준수를 위해서 유해성 폐기물 PCB의 해외 수출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자 캐나다에 지사를 둔 미국의 수입업자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선벨트 (Sun Belt) 1998년 12월 2일		$10.5 million	재판미개시	미국의 생수회사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생수수출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포프 앤 탈봇 (Pope & Talbot)	UNCITRAL	$508 million	**P&T 승소 $621,000**	미국의 목재회사가 1996 미국-캐나다 목재협약에 이의를 제기.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 (United Parcel Service) 2000년 1월 19일	UNCITRAL	$160 million	기각	미국 물류회사인 UPS 캐나다 우체국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케첨 (Ketcham and Tysa Investments) 2000년 12월 22일		$30 million	철회	미국의 목재회사가 1996 미국-캐나다 목재협약에 이의를 제기.
트래멜 크로우 (Trammel Crow) 2001년 9월 7일		$32 million	철회	미국 부동산회사가 캐나다의 입찰절차에 이의를 제기
크롬프톤/ 쳄트라 2001년 11월 6일	UNCITRAL	$100 million	기각	미국화학회사가 캐나다 정부의 유독성 물질의 생산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알버트 코날리 (Albert J. Connolly) 2004년 2월 19일		알려진 바 없음	소송미개시	미국 투자자가 자신의 부동산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 수용당해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
컨트렉추얼 오블리게이션 (Contractual Obligation) 2004년 6월 15일		$20 million	소송미개시	미국의 애니매이션 제작사가 캐나다인을 고용하는 캐나다 회사에게만 세금감면을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
피터 페식(Peter Pesic) 2005년 7월			철회	자신의 노동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서 투자에 손실을 입었다면서 미국의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
그레이트 레이크 팜스 (Great Lake Farms) 2006년 2월 28일	UNCITRAL	$78 million	소송미개시	미국 농상업자가 캐나다 정부의 우유수출 금지조치에 이의를 제기
메릴 앤 링 포리스트리 (Merrill and Ring Forestry)	UNCITRAL	$25 million	기각	미국의 임업자가 캐나나 연방과 주정부의 목재수출 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
비지 갈로 (VG	UNCITRAL	$355.1	계류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Gallo) 2006년 10월 12일		million		철광산을 소유한 미국인 투자자가 주정부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엑손 모빌 (Exxon Mobil Investments and Murphy Oil)	ICSID	$60 million	계류	미국정유회사가 석유채굴시 일정한 비용을 캐나다 저소득 지역발전기금으로 지불하게 하도록 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마빈 코틀렙 (Marvin Gottleb et. al) 2007년 10월 30일		$6.5 million	소송미개시	미국투자자가 투자한 캐나다 “에너지 신탁”에 캐나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
클레이톤/빌콘	UNCITRAL	$188 million	계류	미국투자자가 캐나다 정부의 투자설립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에 이의를 제기
조지아 베이신 (Gergia Basin) 2008년 2월 5일			기타	목재수출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이의제기
센추리온 (Centurion Health)	UNCITRAL	$160 million	종결	원고의 소송기탁금 미납부로 소송종료
다우캐미컬 (Dow Chemincal) 2008년 8얼 25일	UNCITRAL	$2 million	합의	미국 화학회사인 다우캐미컬이 캐나다 주정부가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초제의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제기
말베일 리버 (Malbale River Outfitters) 2008년 9월 10일		$5 million	취하	미국의 낚시, 사냥 서비스 제공업자가 캐나다 정부의 낚시허가 시스템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
데이빗 비숍 (David Bishop) 2008년 10월		$1 million	소송미개시	위 사건과 유사

8일				
쉬엘 (Shiell Family) 200-8년 10월 8일		$21. 3 million	소송미개시	자신들의 사업체가 몬트리올 은행에 의해 사기성으로 강제 부도처리 되었다면서 제기한 소송
크리스토퍼 (Christopher and Nancy Lacich) 2009년 4월 2일		$1,178	취하	미국투자자가 투자한 캐나다 "에너지 신탁"에 캐나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
아비티비 보우워터 (Abitibi-Bowater Inc.) 2009년 4월 23일	UNCITRAL	$467.5 million	**합의, $122million**	2008년 미국회사가 뉴파운드랜드 지역의 제지공장을 폐업했다. 800명의 종업원이 직장을 잃었고 지자체는 원고의 토지와 산업용수 사용권은 공장의 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폐업 후 산업용수사용권과 목재채벌권 그리고 공장설비를 수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122 million으로 합의하였다.
디트로이트 국제교량 (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 2010년 1월 25일		$3,500 million	계류	2007년 2월 캐나다는 "국제 교량과 터널에 관한 법 (International Bridges and Tunnels Act)" 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교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구조변경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통행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자 2010년, 미국 투자자인 디트로이트 국제교량 회사 (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였다.
존 앤드레 (Johmn R. Andre)		$5.6 million 캐나다 달러	계류	캐나나 카리부 지방에 사냥터를 운영하는 미국인 투자자가 지자체가 지역보존구역을 설정함으로 사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
세인트 메리 (Saint Mary's VCNA, LLC) 2011년 5월 13일		$275 million	계류	채석권을 신청한 미국에 지사를 둔 브라질 회사가 캐나다 정부의 느린 허가심사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제기한 소송
메사 파워 (Mesa Power Group)		$775 million 캐나다 달러	계류	온타리오 주정부가 일정한 양의 에너지 재생산업은 지역에서 생산할 것을 의무화 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멕시코를 상대로 제기한 NAFTA 소송

암트레이드 (Amtrade International) 1995년 4월 21일		$20 million	소송미개시	미국회사가 멕시코의 입찰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헬쳇 (Halchette) 1995년			소송미개시	자료없음
메타클레드 (Metaclad)	ICSID	$90 million	**원고 승소 $15.6**	멕시코 연방정부와 허가를 얻은 후 유독성 폐기물

1996년 12월 30일			million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멕시코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원고에 대해 지자체 정부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이미 존재하는 유독성 폐기물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고 공장건축과 더불어 환경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이 지역이 지자체가 선정한 환경보존 지구인데, 공장 부지의 오염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은 지자체의 요구를 원고가 거부하자 지자체는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았음
아지니안 (Azinian, et. al) 1996년 12월 10일	ICSID	$17 million	기각	쓰레기 처리장 계약을 취소한 멕시코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회사의 소송
펠드만 (Felman Karpa) 1998년 2월 16일	ICSID	$50 million	**원고 승소 $1.5 million**	미국담배수출회사가 수출세 환급을 거절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Waste management) 1998년 6월 30일	ICSID	$60 million	기각	쓰레기 처리장 계약을 취소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스콧 애쉬톤 (Scott Ashton Blair) 1999년 5월 21일		자료없음	소송미개시	미국투자자가 멕시코에서 주택과 식당을 구입했는데 멕시코 행정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
파이어맨 펀드	ICSID	$50	기각	미국보험회사가 자사

(Fireman's Fund)		million		상품이 멕시코 정부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
아담스 (Adams, et al) 2000년 11월 10일		$75 million	소송미개시	미국의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이 실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멕시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로마스 산타페 (Lomas Santafe) 2001년 8월 28일		$210 million	소송미개시	미국부동산 업자가 멕시코 정부가 도로확장을 위해 자신의 땅을 강제수용했다며 제기한 소송
가미 (Gami Investments)	UNCITRAL	$55 million	기각	멕시코의 사탕수수 농장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정부가 농장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고 2001년에는 5개의 농장을 강제수용 했다며 제기한 소송.
프랜시스 케네스 (Francis Kenneth Haas) 2001년 12월 12일			소송미개시	멕시코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미국투자자가 제기한 소송
칼마르크 (Calma가)		$400,000	소송미개시	멕시코 인에게 투자관련 사기를 당했다면서 멕시코 법원이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로버트 프랭크 (Robert J. Frank) 2002년 2월 12일	UNCITRAL	$1.5 million	소송미개시	자신의 재산이 멕시코 정부에 의해 압수당했다면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

썬더버드 게이밍 (Thunderbird Gaming) 2002년 3월 21일	UNCITRAL	$100 million	기각	캐나다 비디오게임 업체가 멕시코 정부가 자신의 세 개의 사업장을 강제폐업 조치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게임이 멕시코에서는 1938년 이래로 불법이었다고 주장. 재판부는 사건을 기각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비용 $1.25 milllion을 지급할 것을 명령
콘 프러덕츠 (Corn Products International) 2003년 1월 28일	ICSID	$325 million	**원고승소 $58.38 million**	음료수에 첨가되는 인공 감미료인 옥수수 시럽 (HFCS)을 제조하는 미국회사가 멕시코 옥수수 시럽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자사제품에게 부당하게 부과한다면 제기한 소송
에디엠 테이트 (ADM/Tate & Lyle) 2004년 10월 14일	ICSID	$100 million	**원고승소 $33.5 million**	위와 동일한 사건
베이뷰 (Bayview Irrigation) 2004년 8월 27일	ICSID	$554 million	기각	미국의 17개 간척지구가 멕시코가 정부가 자국의 농지에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수로를 변경하였다며 제기한 소송. 재판부는 미국에 위치한 간척지구는 멕시코 투자자가 아님을 들어 소송을 기각
카길 (Cargill) 2005년 8월	ICSID	$100 million	**원고승소 $77.3**	콘 프러덕츠 그리고 에디엠 테이트와 동일한 사건

30일			million	

도미니칸 리퍼블릭 공화국에 대한 미-중미 (CAFTA) 사건

티시더블유 그룹 (TCW Group et. al) 2007년 3월 15일	UNCITRAL	$600 million	**합의 $26.5 million**	도미니칸 공화국로 부터 국가의 전력시스템 지분을 사들인 미국회사가 간접수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한 사건

엘살바도르에 대한 미-중미 FTA (CAFTA) 사건

퍼시픽 림 (Pacific Rim Corp) 2008년 12월 9일	ICSID	$77 million	계류	캐나다 회사가 엘살바도르의 금광 허가권을 요청하던 중, 환경과 식수 오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처리가 미루어지자 미국의 지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
카머스 그룹 (Commerce Group Corp.) 2009년 3월 16일	ICSID	$100 million	계류	금광운영권이 환경감사로 인하여 취소되자 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

과테말라를 상대로 한 미-중미 (CAFTA) 사건

레일로드 (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 2007년 6월 14일	ICSID	$64 million	계류	과테말라의 철도운영권을 사들인 미국회사가 당초 약속한 5단계 시스템 재건을 1단계 시행 후 이행하지 않던 중, 과테말라의 회사가 운영권을 얻고자 매도 할 것을 요청. 미국회사가 매도하지 않자 과테말라정부가 미국회사의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 이에 미국회사가 소송을 제기
템파 일렉트릭 (Tampa Electric Company Guatemala Holdings, LLC) 2009년 1월 13일	ICSID	알려진 바 없음	계류	과테말라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과테말라 정부의 전기세 인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페루를 상대로 한 미-페루 FTA 사건

렌코 그룹 (Renco Group, Inc./ Doe Run Peru)	UNCITRAL	$800 million	계류	1997년 페루의 공해지역의 제철소를 사유화 하는 계약을 한 미국회사가 페루정부가 요구한 환경정화 기준을 수차례 지키지 못하였다. 동시에 제철회사의 공해물질 배출로 피해를 입은 페루 시민들이 미국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페루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대한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요약정리

총 NAFTA 유형의 사건 수	72		
기각 (정부 승소 사건)	15		Loewen, Mondev, Methanex, Glamis Gold Ltd., 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 Grand River, United Parcel Service, Merrill and Ring Forestry, Chemtura, Azinian, et al, Waste Management, Fireman''s Fund, GAMI Investments, Thunderbird Gaming,

			Bayview Irrigation
투자자 승소사건	10 (10건 모두 미국인 투자자)	**$353.4 million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	Ethyl, S.D. Myers, Pope & Talbot, AbitibiBowater, Metalclad, Karpa, Corn Products International, ADM/Tate & Lyle, Cargill, TCW Group

2. 사건의 분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는 단순히 이것이 최초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초의 ISD를 포함한 무역과 투자협정으로서 투자자 국가제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의의를 말하는 것이다. FTA의 창시자인 미국은 NAFTA를 통해서 ISD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어 그 장단점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요약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FTA에 의한 ISD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패소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국의 패소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하여 NAFTA를 개정하였고,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미국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밝힌 서문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곧 미 대륙에서 NAFTA에 이어, 중미 FTA인 CAFTA 와 미-페루 FTA를 체결하였다.

(1) 미국 투자자의 남소(濫訴) 경향성

자국의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에 대해서는 세심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투자자는 다분히 남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대표적인 남소는 인허가 관련하여 처리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이다. 2011년 세인트 메리(St. Mary's VCNA, LLC)사건을 보면, 미국회사가 캐나다 주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하여 사업 허가가 늦어진 점을 들어 캐나다 연방정부를

제소하였다. 허가가 늦어져서 사업에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약 3000억원의 배상금을 두고 계류 중이다.

2008년의 퍼시픽 림(Pacific Rim Corp) 사건은 캐나다 회사가 엘살바도르의 금광 허가권을 요청하던 중, 환경과 식수 오염의 엘 살바도르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처리가 미루어지자 미국의 지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또 다른 인허가 지연에 관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엘 살바도르와 FTA체결을 하지 않은 캐나다 투자자가 미국지사를 통해서 제소한 사건으로서 ISD 사건의 확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한 남소의 예들도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스콧 애쉬톤(Scott Ashton Blair) 사건의 경우, 멕시코에서 주택과 식당을 구입했는데 멕시코 행정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미국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알려지지 않았고 소송은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소송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남소의 예이다.

2000년 제기 된, 아담스(Adams, et al) 사건의 경우 또한 또 다른 남소의 예이다.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이 실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멕시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자신의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타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에 제소하고서는 소송은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2001년 프랜시스 케네스(Francis Kenneth Haas)가 제소한 사건은 멕시코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한 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서는 개시조차 안한 또 하나의 사건이다. 2009년에 캐나다를 상대로 있었던 크리스토퍼 (Christopher and Nancy Lacich) 사건의 경우, 소송액수는 미화 1176달러 한화 약 130만원 상당의 액수였다. 집단소송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일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치고는 그 액수가 너무 적다.

미국을 상대로 이러한 남소의 예는 없다. 그러나 미국인 투자자의 남소의 경향성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상대국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상대국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겪게 될 칠링 이펙트에 대해서 검토해 볼 때, 남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미국인 투자자의 남소 경향성은 소송문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의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사회의 모든 부분에 법적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미국사회 구조에서 소송은 항상 손쉬운 생활의 도구처럼 쓰인다. 이런 점에서 비록 그 액수나 규모가 일반 소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제소라 하더라도 일정한 재력을 보유한 미국인 투자자들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소송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미 FTA 체결이후, 미국의 투자는 당분간 기업의 형태로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적 거리 때문이기도 하며 중남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에 개인투자자가 소액투자를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든 개인이든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했을 경우,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투자의 손실을 입었을 때, 손쉬운 방편으로 소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협상의 일환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소를 포함한 다수의 소송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 될 경우, 매번 이에 대한 대응을 외주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경비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국가에 대한 소송을 전담하는 “Solicitor General's Office”와 같은 정부소송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일 것이다.

현재 론스타 소송과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대책팀(Task Force)이 꾸려져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TF의 구체적인 논의나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담보한 국가소송기구의 설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에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하기 위한 정부출연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발족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로펌과 같이 수임료를 받는 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다르나,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조직과 유사하다.

또한 2008년 출범 당시 일 년 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서서히 재정독립을 준비한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가 스스로 조직을 출범시켰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Solicitor General’s Office를 모델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직이 출범하면서 활동 업무 중의 하나를 ISD를 대비한 소송의 준비로 잡은 점도 눈에 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이 ISD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전담 대응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을 정부법무공단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로, 수주에 대한 업무적 분담을 덜어주고,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ISD 소송만을 전담하기 위해서이다.

(2) 민영화의 부작용

FTA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인 투자자가 개입된 사건 중, 유명한 볼리비아 수돗물 사건이 있다. 볼리비아는 미국과 직접 FTA를 맺지 않았지만, IMF재정지원을 받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자원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였다.

그중에 상수도는 IMF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사에게 장기 시설운영권을 넘겼다.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수돗물 값이 4배 가까이 상승하자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쓰려 했고, 투자자의 항의에 경찰은 빗물받이

단속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민영화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공공산업은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이익의 관점을 배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한데, 이러한 공공산업이 민영화 되어서 자본의 논리로서 운영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NAFTA 와 CAFTA 사건들의 경우,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공공산업의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ISD 사건들은 대부분 빈국인 중미와 남미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인 캐나다와 상대적 부국인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공공산업의 해외자본으로의 민영화로 빚어진 사건들은 한 건 외에 없다.

그런데 CAFTA 이후 벌어진 중미와 남미국가에 대한 ISD 사건들의 경우,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09년 사건인 템파 일렉트릭(Tampa Electric Company Guatemala Holdings, LLC) 사건의 경우, 과테말라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사들인 미국 회사가 과테말라 정부의 전기세 인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으로서 전기사업의 민영화로 빚어진 사건이다.

2007년 사건인 레일로드(Railroad Development Corporation)사건 또한, 과테말라의 철도운영권을 사들인 미국회사가 당초 약속한 5단계 시스템 재건을 1단계 시행 후 이행하지 않던 중, 과테말라의 회사가 운영권을 얻고자 매도 할 것을 요청하고 미국회사가 매도하지 않자 과테말라정부가 미국회사의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자 이에 미국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역시 공공교통의 민영화로 인한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인데, 이와 다르게 합의가 된 사건도 있다. 2007년 티시더블유 그룹 (TCW Group et. al) 사건의 경우, 도미니칸 공화국으로부터 국가의 전력시스템 지분을 사들인 미국회사가 간접수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도미니칸 공화국은 한화 약 270억원에 합의를 했다.

선진국인 캐나다가 민영화로 인해 받게 된 ISD 소송은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특수성에 기인한 사건이다. 2007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 교량과 터널

에 관한 법 (International Bridges and Tunnels Act)" 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교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구조변경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통행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자 2010년, 미국 투자자인 디트로이트 국제교량 회사(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였다. 국제교량인 엠베서더 국제교량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민간이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대표적인 예다.

민영화로 인한 이러한 ISD 소송의 경우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봄에 일어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이 한 예이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서울시 정부가 요금인상규제 조치를 발효했는데 지하철 9호선에 외국자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울시 정부의 요금정책안정을 위한 어떠한 규제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교통의 민영화의 경우는 특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미 FTA 부속서 11-나 에 의하면 소송 대상 배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정부가 51%의 지분을 쥐고 있으면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49%의 주식 중 일부라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인천공항의 미래는 외국인 투자자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다. 비록 소수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의거하여 51%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자본이건 해외 자본이건 민영화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민영화의 과정에서 개입하는 해외투자자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당장 필요한 자본 때문에 섣불리 해외자본에 손을 내밀 경우, 이후 ISD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환경과 공공정책에 대한 소송

요약에서 보이듯이 3억5300만달러($353million), 한화 4000억원 정도가 이미 미국인 투자자에게 지불되었다. 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이나 보건 등 공공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계류 중인 사건들 또한 거의 모두 이에 관련된 사건들인데 소송액수는 95억달러($9.5billion), 한화 약 10조원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소송은 국민의 복지를 담보해주는 국가의 주요 기능중 하나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인 볼리비아의 경우, 수돗물 사건과 같은 공공분야까지 해외투자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를 포함한 상대적 부국의 경우 그러한 기초적인 공공산업이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호주의 반 흡연법 사건과 같은 경우에서와 같이, 보건과 환경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시, 환경이나 보건 등에 관한 국가의 조치는 예외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를 빌미로 제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발행한 “한미 FTA 주요내용” 에 의하면, “투자와 환경(Investment and Environment) (제.11.10조.) 챕터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 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해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견, 이러한 조항은 투자유치국의 환경입법과 조치에 관한 최대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조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시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투자 유치국의 입법과 행정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조항은 NAFTA 제11장에 있는 환경에 관한 예외조항과

똑 같은 문장이다.[10]

표 1. 한미 FTA 와 NAFTA의 환경에 관한 예외조항 비교

한미 FTA ARTICLE 11.10: 투자와 환경 (INVESTMENT AND ENVIRONMENT)	NAFTA Article 11.14 환경에 관한 조치 (Environmental Measure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ny measu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ny measu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이 조항이 실제로 투자자 국가 분쟁 시 투자유치국의 환경보호에 관한 조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중재재판부의 해석은 이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건들로서는 에틸 v. 캐나다(Ethyl Corp. v. Canada), 메타클레드 v. 멕시코(Metaclad v. Mexico), 에스디 마이어스 v. 캐나다(S.D. Myers v. Canada), 그리고 테크메드 v. 멕시코(Techmed v. Mexico)를 들 수 있다. 이중, 에틸사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나머지 세 개의 소송과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소송은 이러한 환경보호 조항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유보조항을 너무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다.

10) "한미 FTA 주요내용," p. 93

결론부터 말하면, 상이한 국제투자중재재판소들이 환경문제와 관련 소송예외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환경 목적의 진정성(genuine environmental purpose)”을 문제 삼으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가 멕시코를 상대로 ICSID에 1996년 제소를 한 메타글레드 사건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확인된다. 메타클레드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멕시코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동 회사는 멕시코 연방정부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다. 그런데 공장부지가 위치한 지자체 정부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이미 존재하는 유독성 폐기물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고 공장건축과 더불어 환경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지역이 지자체가 선정한 환경보존 지구인데, 공장 부지의 오염이 심한 이유를 들었다. 메타클레드 회사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절했고 지자체는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이에 메타클레드는 ICSID에 제소를 했고 승소했다. ICSID는 총 미화 1560만달러, 한화 약 180억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간접수용에 관한 재판부의 이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멕시코 주정부가 환경보존지구의 지정에 관한 동기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이러한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1]

이 사건에 대해 앞에서 인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보고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 사안은 분쟁 발생원인 중 하나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허가절차 등 제도의 투명성 결여 문제였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중재판정부가 간접수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이함. 중재판부는 수용이 몰수와 같은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재산의 수용(taking)뿐 아니라 재산 사용에 대한 부

11) Metalclad v. Mexico, above n. 2, para 109-111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Tribunal need not decide or consider the motivation or intent of the adoption of the Ecological Decree. Indeed, a finding of expropriation on the basis of the Ecological Decree is not essential to the Tribunal’s finding of a violation of NAFTA Article 1110. However,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logical Decree would, in and of itself, constitute an act tantamount to expropriation.“

수적인 간섭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수용의 의미를 재차 확인함. 이 사례는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되어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되는 경우에는 간접 수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12]

동 보고서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틀린 해석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 환경문제에 대한 분석이 없이 중재재판부의 해석을 그대로 옮겨 놓음에 다름 아니다. 왜 중재재판부가 주정부의 환경조치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간접수용이라고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조치에 대한 예외조항은 사문화 (死文化)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에스디 마이어스 사건의 경우, 캐나다 정부가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의 준수를 위해서 유해성 폐기물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자 캐나다에 지사를 둔 미국의 수입업자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출금지 기간은 16개월이었으며, 이 조치는 캐나다 기업 모두에게 내려진 환경관련 처분이었다. 그런데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작위적인 조치였으며 환경보호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앞선 언급한 대외경제정책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역시 환경조치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 채 재판부의 판시만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상기 캐나다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되어 표면상 중립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내국민에 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판정됨. 이 수출금지 조치는 결국 캐나다에서 마이어즈 사의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여 이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던 국내기업의 이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

캐나다 정부의 보호주의적 조치로 볼 수 있음. 중재재판부는 캐나다의 PCB 처리업체가 캐나다 정부에 수출금지 부과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호주의적 조치의 근거로 판단함."[13]

마지막으로 테크메드 사건의 경우를 보면, 재판부의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된다. 이 사건은 NAFTA 사건은 아니지만, 환경조치에 관련된 사건이다. 멕시코 정부가 매립지의 운영허가 갱신을 거부한 사례로서 재판부는 이를 수용(expropriation)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멕시코 환경연구소(INE)가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매립지의 운영 및 활동을 종료시키도록 한 것에 대해 스페인 투자자가 제소한 본 사건은 멕시코 정부의 환경조치에 대해 재판부가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환경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국제투자중재재판부가 투자유치국의 환경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사실상 환경과 관련한 조치에 대한 ISD 소송금지 조약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NAFTA의 환경관련 예외조항과 똑 같은 예외조항을 담은 한미 FTA가 환경관련 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할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환경조치는 한미 FTA 하에서 ISD 예외 조항임을 들어 환경조치 안전론을 펴왔는데, 기존의 NAFTA 사건들을 분석해 볼 때, 근거 없는 낙관론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Ⅳ.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ISD 소송

1. 론스타

론스타가 2012년 5월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냈다. 이에 국회와 민간단체는 이 소장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론스타 측에서 8월16일 직접 공개했다. 절차상으로 보

13) 위의 책 p. 16

면 론스타는 6개월의 조정기간을 거쳐 11월20일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론스타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사건이다. 산업자본의 성격을 지닌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부분도 그렇거니와 2011년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방한 직후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이 난 부분도 그렇다. 론스타가 제기하는 ISD 소송의 쟁점은 세금부과와 지분매각명령의 지연 그리고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해서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차원의 TF를 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앞서 정부의 ISD 대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이라는 것은 ISD 소송 경험이 있는 로펌을 고용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D 사건을 수행할 조직이 한국정부에는 없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뒤 ISD 사건은 미국의 경우 국무부 산하 법률고문실이, 캐나다는 외교부 내 통상법률국이, 멕시코는 경제부가 맡고 있다. 중재 전문 법률가 수십명이 여기서 일한다. 하지만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교부 답변 자료를 보면 한국에는 이런 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고, 그럴 계획도 없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나욱진 검사가 주로 실무를 맡는다. 대신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앤드포터’를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겨레 21, 2012년 8월27일)

2. 추가 소송과 대책

론스타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발을 함과 더불어 ISD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11일 특허 및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플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문제를 회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의 ISD 조항을 통해서다.” (아시아 경제 2012년 9월 11일)

한미 FTA 체결로 ISD 소송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투자자의 ISD 관련 소송이 예상된다. 그리고 소송의 핵심은 공공분야 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미국 투자자본이 선진국인 캐나다와 다른 남미국가보다 발달한 멕시코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들이 모두 이러한 정부의 공공정책에 기인하였다. 공공정책의 입안은 시장의 논리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 대중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측면이 있다. 역설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소송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 먼저, 공공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시 신중해야 한다. 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변화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모든 공공정책에 대하여 투자영향평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가능한 투자반발에 대해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외투자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국가의 공공정책은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른바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가 조장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점에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무 공무원들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투자자가 무서워서 공공정책이 무력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투자자가 제소하는 이유는 정책의 변화나 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의 손실 때문이다. 기존의 ISD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정책을 입안할 때,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일정정도의 예상이 가

능할 것이며 이는 ISD 소송예방책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와 ISD

지방자치단체 또한 ISD 소송에 노출되어 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심사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할 부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소개한 유독성 폐기물과 관련한 메타클레드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문제는 또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조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4년에 있었던 컨트렉추얼 오블리게이션(Contractual Obligation) 사건의 경우, 미국의 애니매이션 제작사가 캐나다인을 고용하는 캐나다 회사에게만 세금감면을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소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미개시 되었으나 유사한 사건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04년 6월 15일 미국의 메사전기회사(Mesa Power Group)가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 있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재생산 프로그램 운영 시 일정한 퍼센트는 지역에서 생산할 것을 강제한 조치가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었다. 메사전기회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8000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고양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50% 고양시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이러한 시의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먼저 국내에만 국한해 보자.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고양시의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가 좋은 A사와 작업의 대부분의 인력을 서울에서 충당하는 B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B사는 고양시의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판결의 내용이 어떠하든 이 사건은 국내에

서 종결된다. 하지만 여기에 외국인 건설업자가 끼어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곧바로 ICSID로 직행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통상교섭본부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지방자치단체는 ISD 소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2012년 6월 관계부처 합동 발행한 "한미 FTA 주요내용"을 보면, ISD 소송의 당사자 자격 부분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적용 범위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을 포함(제11.16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하고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14)]

이러한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이다.

외교통상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간 갈등이 한미 FTA의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외국인 간 계약은 ISD 제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자체 계약은 국가소송 성립 안돼" 외교부, 일부 주장 반박, 동아일보 2012년 4월 14일)

이러한 주장은, 일견 지방자치단체는 ISD 소송에 대해 면책권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 FTA 제11장 제1절 제3조(제 11.1.3조)를 보면, 투자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1.1.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

14) "한미 FTA 주요내용," p. 96.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ISD 소송의 당사자 자격은 투자유치국가이다. 즉,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위 조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국이 투자자가 ISD 소송을 하면 주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되는 것과 같은 절차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도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ISD에 대해 '미국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ISD 제소할 가능성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은 'ISD의 피소 당사자는 중앙정부로 지자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중앙정부가 진다'고 설명했다."("지자체엔 ISD 소송 못 건다," 중앙일보 2011년 11월 9일)

맞는 말이다. 미성년자의 과실에 대해서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민법의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의 원인제공자는 된다. 지자체가 취하는 모종의 조치가 ISD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는 중앙정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 ISD 소송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한 ISD 소송의 비용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에서 충당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ISD 소송은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제 11.16조[15] 어디에도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

15) 제 11 조 1 1 .1 6
중재 청구 제기
1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 ,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 1 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 ,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 절상의 의무 1
나) 투자인가 또는 ,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 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 목다 또는 나호 목다 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 1) 1)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 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 (의사통보) 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 주소 및 설립지 ·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라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또는 ,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 항에 1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조제 항에 3 6 1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 중재통보 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 3부제 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3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
라. 제 3항 제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그러한 정부의 해석의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는 신규투자자에게 새로운 인센티브까지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가 이를 보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찌 될까? 또한 이러한 경쟁적인 외국이 투자유치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비해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중앙정부가 중심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의 법적 네트워크 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지자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 시 소송경비의 부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져야 할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지만 지자체의 행정조치나 조례에 근거한 소송인 경우 지자체의 법적책임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Ⅴ. 한중 FTA와 ISD

1.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라도 한미 FTA의 ISD는 필요하다는 주장의 비합리성

2011년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불거진 ISD 찬반 논쟁이 있었다. 당시 일단의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한중 FTA를 위해서라도 한미 FTA의 ISD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한중 FTA를 체결할 시 중국이 ISD

5 . 제 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 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도입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이러한 전제는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이 기껏해야 값싼 공산품이나 농산물 정도를 수출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다분히 왜곡된 전제와 결론이다. 중국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만이 아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투자를 받는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해외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오래전부터 ISD에 소극적이지 않았다. 중국이 최초로 외국과 맺은 1982년 스웨덴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는 국제투자중재재판소(ICSID) 제소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듬해 맺은 독일과의 투자협정에는 ICSID 중재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중국이 바바도스(Barbados)와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을 보면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 시 국제중재센터(ICSID)를 이용하는 것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중국이 맺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양은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ISD가 필요하다. 자국의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중국의 투자자가 페루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점까지 고려할 때, 중국은 대한민국과 비교해 ISD 관련 유경험자이다.

게다가 2003년 독일과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을 기점으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도 전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2003년 이전의 중국의 ISD 제소를 위한 투자의 범위는 직접투자만을 포함했으나, 이후에는 간접투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는 비교적 협소했던 투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국 뉴질랜드 FTA 경우에는 투자의 대상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매입까지를 포함할 정도로 확대했다. 중국이 자신들이 해외에 투자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모든 계약서에는 분쟁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맺을 때 이 조항에 이르면, 거의 모두 중국법원 대신 북경이나 해외에 위치한 국제중재위원회를 선호한다. 중국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분쟁의 해결처로 중국법원을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아왔다. 지금껏 외국과 맺어왔던 양자간 투자협정을 봐도 그렇다.

더구나 이제는 자본 수출국이 되어가는 마당에는 오히려 ISD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재차 강조하지만, 한미 FTA에서 ISD를 삭제하면 중국과의 FTA에서도 우리가 ISD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미 우리가 중국과 기존에 맺은 투자협정에도 ISD는 있으며 새롭게 맺을 FTA에서도 중국은 ISD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2. 한중 FTA 체결시 대(對)중국 투자산업의 영역과 ISD

(1) 중국의 해외투자 관리정책

중국은 자국 내의 저발전 산업영역과 문화(文化)산업으로 분류되는 자국민의 국민정서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 왔다. 해외자본이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른바 합작회사(Joint Venture Company)라는 형식을 빌어서 외국의 투자를 유인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 영역도 여러 분야로 분류해 놓고서는 선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했다. 문화산업으로 분류된 방송, 영화, 음악, 도서와 몇몇 서비스 업종과 같은 민감한 영역의 투자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 되어있다. 하지만 그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중국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꾸준히 늘어갔다. 세계인구의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시장의 규모 때문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그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의 한 부분인 TV 드라마의 경우, 2010년 기준 중국의 드라마 총 생산량은 436부로서 세계최대의 드라마 생

산국이 되었다. 같은 해 기준, 영화 흥행 수익은 14.92억달러로서 세계 5위의 영화 시장이 되었다. 중국에는 아직도 엄격한 스크린 쿼터가 존재한다. 외국영화는 상영편수가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극장에 가면 대부분 중국영화가 상영된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영화시장 또한 대부분 국내제작품으로 채워진다고 보면 된다. 최근의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꾸준히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자체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는데다가 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외국의 투자자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중국의 스크린 쿼터제의 장벽에 막힌 할리우드 영화사가 중국영화사와 합작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스티븐 스필버그의 드림워크 영화사가 상해의 두 중국영화사와 합작하여 새로운 영화사를 만들었다. 중국국내에서 영화를 생산할 경우, 스크린쿼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보호조의 정책은 자국 내의 저성장 산업의 취약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과다한 개방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01년 WTO가입 이후로 중국은 여러 차례 미국이 제소한 WTO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다.

2007년 미국은 WTO 중재조정센터에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법이 WTO의 조약에 위배된다면서 제소를 하였고 중국은 패소했다. 그리고 국내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2009년에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제소했다. 개정된 지적재산보호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중국은 또 다시 패소했고 또 다시 법을 개정해야 했다. 2010년에 미국은 또다시 중국의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제약이 WTO 위반이라면서 제소했다. 중국은 또 패소했고 다시 법을 개정했다. 중국은 자국의 보호정책이 여타의 국제무역과 투자의 분쟁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FTA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명문화 된 보호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2) 한중 FTA에서 제기되는 ISD의 문제와 여타의 과제

우리의 경우, 기존의 FTA를 보면,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해외투자에 대해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보다 전향적인 개방정책일 텐데, 쉽게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대한민국이 더 많은 많은 영역에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한중 FTA가 체결 될 경우, 중국의 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 제소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ISD 관련하여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중 FTA의 ISD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보호받을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 다는 말이다.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중국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설치할 투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제일 먼저 ISD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아직도 투자의 대상에 대해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분야가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투자의 대상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ISD의 적용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중 FTA에서 ISD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우리기업과 투자가 중국에서 보호받는 것에만 몰두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필요이상으로 확대했다고 가정하자. ISD라는 날 선 검이 그때그때 어느 쪽을 벨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 FTA는 한미 FTA와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꼼꼼하고 투명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간접수용과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의(definition)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미국주도의 FTA를 그대로 차용할 필요는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성문법 체계이며 미국은 판례법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FTA라는 것

이 양자 간 혹은 소수의 다자간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을 상기할때, 개개의 FTA는 각국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변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양국이 간접수용과 같은 미국식 법적개념에 대해 추가적인 공동의 연구를 통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법적 정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 같은 최근에 맺어진 FTA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동반하고 진행되어야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한중간에 체결 된 투자협정(BIT)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이미 중국현지화를 구축한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서두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끝-

별 첨

론스타와 대한민국
분쟁중재의향서, 적요서
(영문, 한글본)

Lone Star Investment Management SPRL
BE 0811.214.166
Boulevard de la Plaine, 9
B-1050 IXELLES

May 21, 2012

His Excellency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e of the President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Dear Mr. President:

I write on behalf of six Belgian investors that have suffered substantial financial losses due to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se Belgian investors are LSF-KEB Holdings SCA, Star Holdings SCA, HL Holdings SCA, LSF SLF Holdings SCA, Kukdong Holdings I SCA, and Kukdong Holdings II SCA (collectively referenced herein and in the attachment as "Lone Star"). These entities held a number of investments in Korea, most notably a 64.62% stake in Korea Exchange Bank ("KEB").

From at least 2005 until the pres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engaged in a continuing pattern of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conduct toward Lone Star that has substantially and materially impaired the ability of Lone Star to dispose of its investment in KEB, subjected Lone Star and its personnel to repeated acts of harassment, and imposed arbitrary and contradictory tax assessments on Lone Star and its affiliates in contravention of bilateral tax treaties entered into by Korea. As a result of this conduct, Lone Star has suffered billions of euros in damages.

Such conduct by the Korean government is in breach of Korea's obligations to Belgian investors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BIT"). Lone Star has on multiple occasions sent the Government of Korea written notifications of these violations, in particular, through Lone Star's letters to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ated July 9, 2008; February 11, 2009; and January 17, 2012. Notwithstanding these repeated not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failed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Korea.

Further to these notic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1 of the BIT, therefore, Lone Star hereby submits to the Government of Korea its written notification of a dispute, accompanied by a sufficiently detailed memorandum, which describes the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have violated the treaty with respect to Lone Star's investments in Korea. Lone Star stands ready to resolve this dispute amicably and requests a meeting with a person

designated by you to discuss proposals for a possible resolution. Lone Star is prepared to propose specific, concrete steps that could be taken to resolve this matter expeditiously and without resort to arbitration. Absent resolution within six months, however, Lone Star will submit this dispute for arbitration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pursuant to Article 8.3 of the BIT.

Respectfully submitted,

Michael D. Thomson
Director

Attachment: Memorandum Required by Article 8.1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With Respect to the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the Republic of Korea

cc: His Excellency Kim Seung-ho
Acting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elgium and the European Union

Mr. Kim Dae-ki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EMORANDUM REQUIRED BY ARTICLE 8.1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WITH RESPECT TO THE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THE REPUBLIC OF KOREA

I. Overview

1. This document accompanies the notification of a dispute dated May 21, 2012 that six Lone Star companies ("Lone Star" or "Lone Star companies")[1] are providing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stitutes the sufficiently detailed memorandum required under Article 8.1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BIT").

2. The central issue in this dispute concerns the failure by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over a period of several years to approve the purchase by third parties of Lone Star's stake in Korea Exchange Bank ("KEB"). During that period, a series of potential acquirers entered into share purchase agreements with Lone Star, only to have the transactions eventually fall apart in the face of the Korean regulators' refusal to act on the acquirers' applications for approval. When Lone Star was finally permitted to sell its stake in KEB in 2012, the price that Lone Star could command had dropped dramatically, and the damage to Lone Star had escalated to billions of euros. Throughout this period, Korean regulators acted in clear disregard of their legal authority. They were driven, not by legitimate,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propriety of the would-be purchasers, but by a desire to avoid accountability and appease a public that was angry over the profits that the seller, Lone Star, stood to make.

3. Throughout this time, the Korean tax authorities also subjected Lone Star to a series of arbitrary tax assessments that were contrary both to Korean law and to Korea's obligations under its tax treaties with Belgium and other countries. Again, the regulators were not motivated by a legitimate, fair application of the relevant tax rules, but by a desire to appease public discontent over potential capital outflows to a foreign investor tax-free. Accordingly, the

[1] The six Lone Star companies are Belgian investors LSF-KEB Holdings SCA, Star Holdings SCA, III. Holdings SCA, LSF SLF Holdings SCA, Kukdong Holdings I SCA, and Kukdong Holdings II SCA.

regulators used whatever means possible to maximize Lone Star's tax liability,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such measures or their consistency over time.

4. In connection with these actions, Korean regulatory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subjected Lone Star personnel to continuing, unwarranted harassment, arrests, investigations, and audits.

5. Korea's conduct has resulted in billions of euros of damages to Lone Star, and, in the process, Korea has breached its obligations to Belgian investors and their protected investments under the BIT.

6. In this memorandum, Lone Star will detail: (1) Lone Star's acquisition of shares in KEB and the merger of Korea Exchange Bank Credit Service Co., Ltd. ("KEBCS"), a failing credit card affiliate of KEB, into KEB; (2) Lone Star's repeated efforts to sell its investment in KEB, and the pattern of harassment and arbitrary conduct exhibited by Korea during this process; (3) the arbitrary and contradictory tax assessments Korea has levied on Lone Star; and (4) claims that arise under the BIT as a result of Korea's conduct.

II. Acquisition of KEB and Rescue of KEBCS

A. Original Acquisition of KEB

7. In 2003, Lone Star invested in KEB, then Korea's fifth largest bank, which was in desperate financial straits due to significant bad debts and facing a serious risk of failure. KEB's plight was part of a much larger credit crisis that struck Korea's economy, which resulted in the failure or near-failure of several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time, KEB's major shareholders – Commerzbank AG ("Commerzbank"),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and the Bank of Korea ("BOK") – were unwilling or unable to recapitalize KEB.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d signaled publicly that it was no longer willing to make public funds available to bail out failing banks. No other bank, foreign or domestic, was interested in recapitalizing KEB. Lone Star was the only investor willing to take the substantial risk of investing in this large, but failing,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to try to turn it around.

8. The Korean government had a direct financial interest in the viability of KEB and stood to benefit substantially from Lone Star's investment. The bank's second- and third-largest shareholders, KEXIM (32.5% of shares) and the BOK (10.67% of shares). were government-owned financial institutions. Consequently, considerable public funds had already been injected into KEB, and were at risk due to the bank's precarious financial condition. A KEB failure would also have had grave ramif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t large. further destabilizing financial markets that were already weakened by the insolvencies of multiple Korean conglomerates (*chaebols*) and credit card companies. By injecting KRW 1.075 trillion (approximately EUR 783 million) of new capital into KEB and purchasing existing shares from KEXIM for KRW 166 billion (approximately EUR 121 million), Lone Star would enable the government to recover public funds invested in the bank and provide much-needed stability to Korea's financial system.

9. Lone Star stood ready to invest this significant amount into the bank and to work hard to return the bank to being a strong, consistently profitable institution. Under Korean law, however, any entity seeking to acquire a substantial stake in a Korean commercial bank must first receive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Furthermore, under the Korean Bank Act (as amended on April 27, 2002), the FSC could only approve such an investment if the FSC was satisfied that the potential acquirer was not a non-financial business operator ("NFBO") (otherwise, the NFBO investor could hold no more than 4% of the bank's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voting shares).

10. Lone Star submitted the required application to the FSC for approval shortly after entering into the binding agreement to recapitalize the bank. On September 26, 2003, the FSC approved Lone Star's acquisition of 51%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KEB, as well as Lone Star's right to exercise call options to acquire additional shares from Commerzbank and KEXIM within the limit of 65.23% of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voting shares.

11. On October 30, 2003, Lone Star closed on its acquisition of 51% of KEB's shares for KRW 1.383 trillion (approximately EUR 1 billion). Contrary to later allegations, Lone Star did not purchase the KEB shares at a "fire sale" price. In fact, Lone Star paid a premium of 13% over the publicly traded price at the time the terms of Lone Star's investment were agreed and a

55% premium over the share price in March 2003, when Lone Star began full-scale due diligence on KEB. Lone Star exercised its call options to acquire an additional 14.1% of KEB shares for KRW 774 billion (approximately EUR 636 million) on May 30, 2006 (and provided the required notice of that acquisition to the FSC on May 11, 2006). Thus, at this point Lone Star had invested KRW 2.2 trillion (approximately EUR 1.6 billion) in KEB.

B. Merger of KEBCS into KEB

12. During the due diligence and negotiation period leading up to Lone Star's initial investment in KEB, Lone Star quickly discovered that KEBCS was in serious financial distress. Considering KEB's interest in KEBCS to be worthless, Lone Star was fully prepared to see KEBCS fail rather than risk the viability of KEB itself by having KEB try to rescue KEBCS. However, immediately after Lone Star made its enormous investment in KEB, the Korean regulators warned KEB that they would exercise their regulatory authority to hold KEB and its major shareholder (*i.e.*, Lone Star) responsible if KEB did not rescue KEBCS, and that KEB risked losing its ability to engage in the credit card business in the future. Capitulating to the intense pressure exerted by the regulators, on November 20, 2003, KEB, with Lone Star's acquiescence, first purchased the shares of KEBCS held by the other major shareholder in KEBCS, Olympus Capital, and then rescued KEBCS by merging it into the bank.

III. Arbitrary and Hostile Conduct of Korean Regulators in Response to Public and Political Opposition to Lone Star

13. Despite the fact that Lone Star had come to the rescue of a maj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when no one else was willing, providing much-needed capital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had relented in the face of the Korean regulators' intense pressure to then stretch that capital to rescue KEB's failing credit card affiliate, public opinion soon soured on foreign investment into Korea generally, and on Lone Star in particular. Lone Star quickly became the target of a hostile Korean public resentful of the profits that Lone Star was perceived to be earning on its investments in the country. The Korean public labeled Lone Star "meoktwi," or "eat and run" foreign capital, which supposedly bought Korean assets at fire sale prices only to re-sell them shortly thereafter at substantial profits.

14. The public demanded that Lone Star's profits be eliminated or curtailed,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As explained below, Korean regulators undertook, by any means necessary without regard to legality, to block Lone Star from disposing of its investment in KEB at its fair market price, thereby preventing Lone Star – for years – from realizing the returns to which it was entitled. Throughout this process, the Korean public and government officials ignored the facts that Lone Star had rescued KEB (and its credit card affiliate) when the bank was failing, paid a substantial premium for its shares in KEB, and made possible a remarkable financial turnaround for the bank and its credit card operations. Rescuing the bank also had the effect of saving Korea from further collateral damage to it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and overall economy.

15. The unrelenting attacks on Lone Star continued for several years before Lone Star was finally permitted to sell its stake in KEB in 2012. During this time, Lone Star was constantly besieged by myriad government audits, investigations, exorbitant tax assessments, and other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easures, while its personnel were subjected to harassment, arrest, sanctions, and even imprisonment. These actions by the Korean government have caused Lone Star to incur losses of billions of euros.

A. Failed Attempts to Sell Lone Star's Investment in KEB and Related Harassment

16. Beginning in 2006, after KEB had returned to profitability, Lone Star made multiple attempts to sell its interest in KEB. The FSC frustrated those efforts by unreasonably, unjustifiably, and unlawfully delaying approval of the sales. The reason the FSC gave for the delays was that it did not wish to approve a sale while various investigations and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Lone Star were still pending. This position, however, was a mere pretext. None of the allegations relating to Lone Star were legitimate grounds for the FSC to withhold approval of the proposed purchasers of Lone Star's shares in KEB.

17. Under Korean law, a regulatory review of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n acquisition of a substantial stake in a commercial bank is limited to an examination of the qualifications and conditions of the potential acquirer and the target subsidiary. Thus, by refusing to approve the applications made by proposed purchasers due to concerns over the *seller*, the FSC was acting outside the scope of its authority. As would become clear, the FSC's

behavior was driven by a desire to avoid becoming the target of public outrage for failing to prevent Lone Star from making what many perceived as unfair financial gains. The public demanded that the FSC block Lone Star from realizing profits on the sale of a controlling interest in KEB (or, at a minimum, drive down the price Lone Star could receive for the shares), and the FSC sought to placate those demands by simply refusing to act on the proposed sales.

18. Under Korean law, the FSC is required to process an acquiring entity's application within 30 days.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is review period can be extended by an additional term no longer than the original review period (*i.e.*, an additional 30 days) only where unavoidable circumstances exist. In the case of Lone Star's proposed sales of its stake in KEB, however, applications to acquire Lone Star's stake in KEB remained pending for so long, sometimes for over a year, that a string of potential sales collapsed.

19. The FSC's treatment of the applications to acquire KEB stands in stark contrast to its treatment of applications to acquir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were being sold by other investors. In fact, all other applications for bank acquisitions that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Lone Star's investment in KEB were approved well within the 60-day period specified in Korean law.

20. As a result of the FSC's obstructive delays, Lone Star was repeatedly deprived of its right to dispose of its investment. As explained below, after years of delays, Lone Star was eventually permitted to sell its shares in KEB – but at a price drastically lower than the prices at which it had contracted with previous parties.

1 Attempted Sale to Kookmin Bank

21. Lone Star first put its stake in KEB up for sale in January 2006. By this time, under Lone Star's stewardship, KEB's financial situation had made a complete turnaround. Its share value had appreciated by 240%, its net equity had increased from KRW 1.838 trillion (as of June 30, 2003) to KRW 5.658 trillion (as of December 31, 2005), and its capital adequacy (BIS) ratio had surged from 9.32% (as of FYE 2003) to 13.68% (as of FYE 2005). With these positive results on the books, on May 19, 2006, Lone Star executed a Share Purchase Agreement

("SPA") with Kookmin Bank ("Kookmin") for the sale of Lone Star's 64.62% stake in KEB for KRW 6.3 trillion (approximately EUR 5.2 billion). Kookmin timely filed its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acquisition with the FSC in late May 2006.

22. In the meantime, however, Lone Star had become the target of an onslaught of investigations by Korean government agencies prompted by public hostility to the profits that Lone Star stood to realize from the sale of its stake in KEB. These investigations included an audit of Lone Star's original acquisition of KEB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conducted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06; a criminal investigation of Lone Star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in response to complaints filed by, *inter alia*,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7, 2006 and an anti-foreign activist group called SpecWatch Korea on September 14, 2005; and an investiga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 executive arm of the FSC. The root of these investigations was the unfounded allegation that the original sale of a majority stake in KEB to Lone Star was illegal due to wrongdoing by the government, KEB, and Lone Star actors involved.

23. In furtherance of these allegations, government agencies harassed key Lone Star personnel by subjecting them to intensive investigations, seeking warrants for their arrest, and imposing heavy sanctions. Beginning on October 31, 2006, the SPO made multiple attempts to obtain a detention warrant for Mr. Paul Yoo (the former head of Lone Star Advisors Korea, L.L.C. ("LSAK")), and arrest warrants (for questioning) for three other Lone Star-appointed directors on KEB's board at the time of the KEBCS merger, *i.e.*, Messrs. Ellis Short, Michael Thomson, and Steven Lee. In a dramatic example of the lengths to which the Korean authorities would go to pander to public opinion, the SPO took the unprecedented step of circulating a mass email on November 6, 2006 to thousands of Korean journalists, academics, and lawyers that openly disputed the ruling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ing the applications for the warrants. Notably, however, the SPO did not indict or seek arrest warrants for any of the KEB directors who were not affiliated with Lone Star, all of whom had also approved the KEBCS merger, including the director who had made the public statements that the SPO claimed were illegal.

24. Despite the fact that these investigations of Lone Star and its personnel had no bearing on the issue of whether Kookmin was eligible to purchase Lone Star's stake in KEB, the FSC delayed and ultimately refused to take any action on Kookmin's application on the basis that these investigations were ongoing.

2. Attempted Sale to DBS Bank

25. After Kookmin's proposed purchase of Lone Star's stake in KEB failed in November 2006, Lone Star was approached by Singapore-based DBS Bank ("DBS") in January 2007 to acquire Lone Star's stake in KEB. Again, however, the FSC quickly made it clear to DBS that it would not approve the sale. As a result, DBS had no choice but to abandon its efforts to acquire KEB.

26. Around the same time as the breakdown of negotiations with DBS, the FSC decided, in response to public pressure, that it would revisit its earlier interpretation that Lone Star was a non-NFBO. Despite initially accepting since 2003 that Lone Star was not an NFBO, and was therefore qualified to own more than 4% of KEB, the FSC commenced an extensive review of Lone Star's overseas affiliates to reassess Lone Star's status.

3. Block Sale of KEB Shares on the Open Market

27. Throughout this time, under Lone Star's stewardship, the bank continued to strengthen, reflecting stable profitability and prudent growth. Nevertheless, given the FSC's public stance that it would not consider approving any buyer of Lone Star's stake in KEB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re was growing uncertainty about when Lone Star would be able to exit its investment and on what terms. With this public posture, and after two failed sale attempts already, it was also unclear whether Lone Star could even find another interested buyer. Thus, in order to reduce its exposure while the investment remained in limbo, on June 22, 2007, Lone Star sold 13.6% of KEB's shares on the open market for KRW 1.2 trillion (approximately EUR 1 billion). The FSC could not block the sale because FSC approval is not needed when no single buyer acquires a substantial stake in the bank. At the same time, however, Lone Star had to sell the shares at a substantial discount to the price it could have commanded had it sold a controlling block; in fact, the sale price was below even the publicly listed per-share price at the time.

4. Attempted Sale to HSBC

28. Following the block sale, Lone Star was approached by HSBC Asia Pacific Holdings (UK) Ltd. ("HSBC"), and on September 3, 2007, Lone Star and HSBC executed an SPA at a price of approximately KRW 6.0 trillion (approximately EUR 4.7 billion) for what was now a 51.02% interest in KEB. On December 17, 2007, HSBC submitted its application to the FSC for approval of the acquisition. But the Korean government once again obstructed Lone Star's attempt to sell its stake in KEB.

29. By the time of HSBC's application, the abovementioned investigations by the BAI and SPO as to Lone Star's original acquisition of KEB had already concluded, with no charges brought against Lone Star or its representatives. Still, the FSC continued to refuse to rule on HSBC's application. As noted, the law required the FSC to limit its examination to the qualifications of the purchaser (*i.e.*, HSBC), but, once again, the FSC withheld approval for reasons related to the seller, Lone Star. To explain its delay in processing HSBC's application, the FSC cited ongoing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allegations that Mr. Yoo had manipulated the stock price of KEBCS in connection with its merger into KEB. On February 1, 2008, the FSC announced that it would not approve HSBC's acquisition of KEB until all legal battles were resolved. However, no statutory or regulatory basis exists under Korean law for withholding approval on such grounds.

30. Further demonstrating that the FSC's behavior was driven by political rather than legal factors, FSC Chairman Kwang-woo Jun announced on June 5, 2008 that the FSC "needed to take public sentiment into account" in its consideration of HSBC's application and that "sufficient national consensus would have to be obtained" in order for the FSC to change its stance and act on HSBC's application. Again, neither public sentiment nor national consensus is a legitimate basis for delaying or denying an application to acquire a substantial stake in a bank.

31. Between July and September 2008, Lone Star sent a series of letters to FSC Chairman Jun, urging a prompt decision on HSBC's application to acquire KEB, and indicating that Lone Star intended to pursu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refusal to act on HSBC's application. The FSC nevertheless failed to take any action on the

application. On September 18, 2008 – nine months after its application had been submitted – HSBC terminated the SPA.

5. Sale to Hana Financial Group

32. After weathe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Lone Star attempted for the fourth time to sell its stake in KEB. On November 25, 2010, after a year-long, transparent worldwide search for buyers, Lone Star found a potential acquirer, Hana Financial Group, Inc. ("Hana"). Lone Star and Hana executed an SPA with a contemplated sale price of KRW 4.7 trillion (approximately EUR 3.1 billion). The SPA provided for a generous six-month term to close the sale. Hana filed its application for approval with the FSC on December 13, 2010.

33.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y, announced its approval of the sale on March 9, 2011. The FSC, meanwhile, announced that Hana's application, along with Lone Star's status as an NFBO, would be discussed at its meeting on March 16, signaling that the FSC expected to approve the application at that time. However, on March 10, in an appeal that had been pending before it for two-and-a-half years, the Supreme Court suddenly vacated the Seoul High Court's not guilty verdict against Mr. Yoo for stock price manipulation related to the KEBCS merger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At its meeting on March 16, the FSC did re-affirm that Lone Star was not an NFBO (consistent with its determination in 2003), but it still did not approve Hana's application to acquire Lone Star's shares in KEB.

34. The FSC used the public uproar over the Supreme Court's unexpected remand as an excuse for delaying action on Hana's application. Under Article 16-4(3) of the Bank Act and Article 215 of the repeale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SC may order a shareholder that has been sanctioned within the preceding five years for violating a finance-related law or regulation to reduce its shareholding to the prescribed limit of 10%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Thus, if the courts ultimately determined that Lone Star had violated a finance-related law or regulation as part of the merger of KEB and KEBCS, then the FSC would be authorized to order Lone Star to sell its shareholding in excess of 10% of KEB's shares. It was ostensibly on this basis that the FSC delayed acting on Hana's application. The

irony in the FSC's reasoning, of course, was that the FSC was using a law under which the FSC could *order* Lone Star to sell its majority stake in KEB as an excuse for *preventing* Lone Star from selling that same stake.

35. As the parties continued to wait for the FSC to act on the application, Lone Star and Hana agreed on July 8, 2011 to extend the SPA until November 30, 2011, a year after Hana's original application to the FSC.

36. On October 6, 2011, the Seoul High Court issued a ruling in the KEBCS stock manipulation case, finding Lone Star vicariously liable as a result of alleged wrongdoing during KEB's merger with KEBCS. Although Lone Star took the view that the court's verdict was baseless, Lone Star decided that it was in the best interest of its investors to allow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to become final, and thereby to provide the finality in the case that the FSC had declared repeatedly and publicly as being necessary before it would act on any application to acquire Lone Star's stake in KEB. Accordingly, Lone Star did not appeal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and the decision became final as of October 14, 2011. In a series of letters sent to the FSC, Lone Star explained that it had decided not to appeal the decision and could not bring itself in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nk Act. Lone Star noted that the end of the court litigation had removed the last of the FSC's stated obstacles to acting on Hana's application. Lone Star also pointed out that the only appropriate remedy at that point was to approve Hana's application, facilitating the removal of Lone Star as the major shareholder of KEB without needing to resort to issuing a sale order. On this basis, Lone Star urged the FSC to approve the sale promptly.

37. However, the FSC – responding to public and political pressure to sanction Lone Star and prevent it from reaping the profits that it stood to earn on the sale to Hana – appeared determined to postpone any approval until after November 30, 2011, the date when Hana's commitment under the SPA would expire, to pressure Lone Star to renegotiate a lower price. In fact, the FSC publicly made it clear that it would not approve Hana's application until the sale price was lowered.

38. On October 17, 2011, the FSC notified Lone Star that it intended to issue a "compliance order" based on the recently finalized (as to Lone Star) Seoul High Court decision

in the KEBCS case, which would require Lone Star to bring itself into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nk Act. This of course was impossible, because Lone Star's "noncompliance" was that it had been found guilty (vicariously) of a financial crime – a judgment that was now final and unappealable and, therefore, impossible to correct. Recognizing that this was no more than a delay tactic by the FSC, Lone Star responded to the FSC with a plea that the FSC focus instead on processing Hana's pending application. The FSC nevertheless issued the Compliance Order on October 25, 2011. Importantly, this formal order stripped Lone Star of its voting rights in excess of 10% of KEB's outstanding shares. Lone Star responded immediately, noting that it could not satisfy the Compliance Order and reiterating its request that the FSC take action on Hana's application.

39. Almost a month later, on November 18, 2011, the FSC issued a Disposition Order, which ordered Lone Star to dispose of its shares in KEB in excess of 10% by no later than May 18, 2012. As a result, Lone Star was now facing an order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dispose of the bulk of its shar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without the ability to sell those shares to Hana, as it was contractually obligated to do and had sought to do for the past year. On that same day, while the SPA with Hana was still binding but subject to the FSC's approval, the FSC also announced that significant changes had occurred since Hana had submitted its original application almost a year earlier that would affect Hana's takeover of KEB and that, therefore, the FSC would direct Hana to submit a new application taking these changed circumstances into account. One of the changed circumstances highlighted by the FSC was that it had just stripped Lone Star of its majority voting rights with respect to its KEB shares. Public comments by FSC officials surrounding this press release made it clear that the FSC expected Hana to cut the price it was to pay for Lone Star's KEB stake.

40. On the strength of the FSC's announcement, Hana demanded that Lone Star agree to a substantial price reduction, asserting that a price reduction was necessary for the FSC to approve Hana's application without further delay. Facing the deadline of the Disposition Order, and with no realistic prospect of starting yet another sales process to find a buyer within such a limited amount of time, Lone Star determined that it had no choice but to accede to Hana's demands to cut the sale price. Thus, on December 3, 2011, Lone Star agreed to reduce the sale price to approximately KRW 3.9 trillion (approximately EUR 2.6 billion) from the initial KRW

4.7 trillion (approximately EUR 3.1 billion). Hana filed a second application with the FSC on the basis of this revised cut-price contract on December 5, 2012.

41. Because of the negative political climate surrounding the sale, however, the FSC continued to delay action on even this simple re-filed application. On January 17, 2012, almost two weeks after the 30-day statutory period had expired on Hana's second application, Lone Star wrote yet again to the FSC, noting the impossible situation in which it had been placed by the FSC's Compliance Order and Disposition Order absent approval of the Hana acquisition. Lone Star further stated that it would be compelled to pursue claims under the BIT. The FSC finally approved the sale to Hana on January 27, 2012, and the transaction closed on February 9, 2012 at the substantially discounted price that the parties had set on December 3, 2011.

B. Arbitrary Tax Audits and Assessment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42. In parallel with the events relating to Lone Star's efforts to sell its stake in KEB, the Korean government repeatedly imposed taxes on the Lone Star companies in direct contravention of Korea's obligations under its tax treaty with Belgium ("Korea-Belgium Tax Treaty"). In an effort to maximize Lone Star's tax liability to appease an increasingly hostile Korean public,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NTS"), over the course of seven years, repeatedly reversed its own methodology for assessing taxes and improperly disregarded the treaty benefits to which the Lone Star companies, all resident in Belgium, were entitled.

43. Under the terms of the Korea-Belgium Tax Treaty, the capital gains realized by a Belgian entity from the sale of shares in a Korean corporation may not be taxed in Korea; Belgium retains the exclusive right to tax such gains. This type of provision, whereby the country of residence retains the right to tax gains and the source country (*i.e.*, the country in which the investment is made) cedes such right, is common in bilateral tax treaties. Nevertheless, based on a number of unsupported and far-fetched allegations, including that Belgium was a tax haven or that the Lone Star companies were mere conduits that served no purpose other than obtaining improper tax benefits, the NTS refused to honor Korea's binding obligations under its treaty with Belgium. Instead, the NTS took the position that it could disregard the Belgian entities and instead tax upper-level non-Belgian investors "in substance."

44. Additionally, as discussed in more detail below, between 2005 and the present, the NTS has taken a series of contradictory positions with respect to the taxation of Lone Star's sales of shares in Korean companies, with the end goal of maximizing taxation in each instance. Where taxation in Korea could be maximized if Lone Star were treated as having a fixed place within Korea through which it regularly and continuously conducted business (commonly called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PE" in tax treaties), then the NTS has argued that such a PE existed in Korea. Where the NTS believed that greater taxation could be realized without asserting that a PE existed, then the NTS has concluded that no such PE existed in Korea. Over the course of several transactions, the NTS initially concluded that Lone Star entities did *not* have a PE in Korea, then the NTS found that they *did* have a PE in Korea, and then, once again, it concluded that they did *not* have a PE in Korea. Further, even when the NTS concluded that Lone Star entities did not have a PE in Korea, the NTS ignored the applicable tax treaties and assessed or withheld Korean taxes based only on Korean domestic law.

45. Lone Star's dispute with the NTS began in April 2005, when the NTS initiated an audit of Lone Star by illegally and forcibly raiding the Seoul offices of LSAK without a warrant or LSAK's consent. LSAK is a separate company that existed to provide services to various Lone Star entities in Korea, and was never owned or managed by the Lone Star companies. The NTS raid was prompted by public discontent over profits earned by Lone Star from the sale of shares of a Korean company, the Star Tower Corporation, that owned an office building called Star Tower, as discussed below. During the raid, the NTS illegally seized certain sensitive, confidential, and highly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that did not relate to the matters under audit and thus which Lone Star and the NTS had previously agreed would not be accessed as part of the audit.

46. Beginning in October 2005, the NTS assessed massive taxes relating to virtually all of Lone Star's Korean investments and operations and filed criminal complaints with the SPO against various Lone Star affiliates and personnel. In particular, the NTS assessed KRW 112 billion (approximately EUR 92 million) in capital gains taxes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the shares of Star Tower Corporation.[2] Star Tower Corporation was owned by Star Holdings SCA, a

[2] The NTS also assessed taxes against 17 other Lone Star affiliates totaling KRW 72 billion (approximately EUR 59 million).

Lone Star investment holding company organized under Belgian law. The Korea-Belgium Tax Treaty expressly provides that Korea may not impose tax on the sale of shares of a Korean entity where the seller or "alienator" of the shares is a Belgian resident. However, the NTS asserted that Star Holdings SCA was not the true beneficial owner of the shares of the Star Tower Corporation, a position wholly at odds with the Korea-Belgian Tax Treaty. Indeed, as noted below, Belgium formally objected to the NTS's position and requested that Korea and Belgium discuss the issue as provided for in the treaty.

47. In disregarding Star Holdings SCA as the seller or "alienator" of the shares of Star Tower Corporation, the NTS asserted that the ultimate investors, *i.e.*, the investors in the U.S. and Bermuda partnerships that indirectly owned Star Holdings SCA, were the "true" owners of Star Tower Corporation. However, the NTS claimed that it did not know who those investors were, and then instead simply assessed taxes against the U.S. and Bermuda partnerships. Even if that determination were correct (which it was not), a majority of those gains still should have been exempt from taxes in accordance with Korea's tax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e NTS asserted, also incorrectly, that the proceeds were taxable in Korea under Korea's domestic law,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because the gains in question arose from the sale of a Korean company whose primary asset was real estate. Under this pretext, the NTS assessed Korean taxes against the U.S. and Bermuda partnerships that had invested indirectly in Star Tower Corporation. Even if correct (which it clearly was not), taxing the non-Korean partnerships in that manner would only be permissible if those fund partnerships did not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48. In addition, the NTS taxed these entities under Korea's personal income tax regime (*i.e.*, the regime applicable to individuals), which imposes higher tax rates than the corporate tax regime. After years of litigation through the Korean court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January 2012 found in favor of Lone Star, on the narrow (but sufficient) ground that, even assuming that all of the NTS's other arguments were valid, it was improper to tax these entities as individuals. The decision required the NTS to refund the tax imposed. Undaunted, however, the NTS simply re-assessed the entities under the corporate tax regime, and unilaterally applied the ordered refund against these new taxes (refunding only the balance that is attributable to the lower tax rates under that regime). Thus, after seven years of litigation and a favorabl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Lone Star now faces years more of litigation over the same basic issues in the Korean courts.

49. In any case, as noted, under Korean law and the applicable tax treaties, the NTS could only impose these taxes (under the individual or corporate tax regime) in the manner that they did if the fund partnerships did not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The NTS's position in the Star Tower matter contrasts sharply with the position it adopted in virtually the same fact pattern involving Lone Star that arose only two years later.

50. In 2007, five Belgian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affiliated with Lone Star sold shares in three other Korean companies: (i) a block sale of 13.6% of shares in KEB owned by LSF-KEB Holdings SCA ("LSF-KEB") (referenced in Section III.A.3 above); (ii) a sale of shares owned by HL Holdings SCA and LSF SLF Holdings SCA in Starlease Co., Ltd. ("Starlease"); and (iii) a sale of shares owned by Kukdong Holdings I SCA and Kukdong Holdings II SCA in Kukd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Kukdong").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se Korean companies mirrored the ownership structure of Star Tower Corporation. However, in July 2008, the NTS assessed taxes on these sales by applying a methodology directly contrary to that which it had applied to the Star Tower Corporation sale, imposing aggregate taxes of KRW 153 billion (approximately EUR 93 million).

51. None of the three 2007 transactions involved the sale of a Korean company whose primary asset was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NTS wanted to assess Korean taxes on these three sales, it could not rely on the same theory (which itself was incorrect) that it had applied in the Star Tower Corporation context. Consequently, if the NTS concluded that the Lone Star entities involved in the three sales did not have a PE in Korea (as was the case with the Star Tower transaction), then the vast majority of the sale proceeds would be covered by a tax treaty (*i.e.*, the treaties with Belgium or the countries of residence of the ultimate fund investors) and not subject to tax in Korea. This outcome was evidently unacceptable to the NTS. It therefore developed a new theory to assess Korean taxes on the sales.

52. In this instance, the NTS again ignored each of the Belgian entities that had sold the shares, but this time asserted that the upstream U.S. and Bermuda partnerships *had* PEs in Korea (and a portion of gains from the sale of the shares was, therefore, taxable in Korea)

because of business activities performed by employees of LSAK and Hudson Advisors Korea, Inc. ("HAK"), an affiliated asset management company in Korea. As noted,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Lone Star entities in the KEB, Starlease, and Kukdong transactions mirrored the structure of the entities in the Star Tower Corporation transaction, where the NTS had effectively determined only two years earlier that the upstream investors did *not* have a PE in Korea. As these events demonstrate, it was clear that the NTS would use whatever methodology was necessary, regardless of its legality or consistency with the NTS's previous positions, in order to ensure that significant Korean taxes would be assessed.

53. Concerned by Korea's violations of the Korea-Belgium Tax Treaty, on August 8, 2007, Belgium formally requested that the NTS begin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treaty to resolve the dispute with respect to the treatment of Star Holdings SCA. On September 27, 2007, in violation of the treaty, the NTS denied Belgium's request for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refusing even to discuss the matter with the Belgian government.

54. Then, as noted above, in February 2012, Lone Star was finally allowed to sell its majority stake in KEB to Hana. But yet again, the NTS reversed its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methodology for assessing taxes. Even before the FSC approved the sale, the NTS instructed Hana to withhold capital gains taxes from the sale price to be paid to Lone Star. Under Korean law, withholding taxes are imposed only where the selling person does *not* have a PE (and where that withholding tax is not eliminated by any applicable tax treaty). Therefore, by ordering Hana to withhold taxes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and sale of the KEB shares, the NTS was necessarily of the view that Lone Star did *not* have a PE in Korea. In doing so, the NTS took a position that was directly opposite to the position it took with respect to Lone Star's 2007 block sale. Furthermore, the NTS ignored the fact that the proceeds of the 2012 sale were exempt from Korean withholding tax under the Korea-Belgium Tax Treaty (or, accepting for the sake of discussion the NTS's position that the ultimate fund investors are the "true" taxpayers with respect to this investment, under the treaties with the countries of residence of those ultimate investors). It would appear obvious that the NTS took a contradictory position here yet again because this was the only way that it could assess significant taxes on the sale.

55. Following the NTS's instruction, Hana withheld taxes of KRW 431 billion (approximately EUR 292 million) from the sale proceeds and paid this amount to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and the Namdaemun District Tax Office on March 5, 2012 and March 7, 2012, respectively.

56. In sum, the NTS has imposed taxes against Lone Star in respect of these investments in Korea, aggregating approximately KRW 800 billion (approximately EUR 540 million), by blatantly disregarding the rights of Belgian shareholders under the Korea-Belgium Tax Treaty, while at the same time continuously altering its substantive positions from investment-to-investment and time-to-time as needed to achieve its singular goal of imposing the maximum tax on Lone Star.

IV. Claims Raised Under the BIT

57. As demonstrated by the foregoing, the Government of Korea has violated its obligations to Lone Star under the terms of the BIT. Lone Star has on multiple occasions put the Korean government on notice of these violations, both orally and in Lone Star's letters to the FSC of July 9, 2008; February 11, 2009; and January 17, 2012.

58. Lone Star is herewith submitting to the Government of Korea its written notification of a dispute, accompanied by this sufficiently detailed memorandum, as required under Article 8.1 of the BIT.

59. The investors in this dispute are the Belgian companies LSF-KEB Holdings SCA, Star Holdings SCA, HL Holdings SCA, LSF SLF Holdings SCA, Kukdong Holdings I SCA, and Kukdong Holdings II SCA. These investors held investments protected under the BIT – primarily the 64.62% stake in KEB, but also other investments. Through the acts discussed ab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violated with respect to these investments:

- Article 2.2: Obligation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and continuous protection and security;
- Article 2.3: Prohibition of impairment by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easures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investments;

- Articles 3.1 and 3.2: Obligation of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to investments and returns of Korean investors or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and that accorded to Korean investors or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 Article 5: Prohibition of uncompensated expropriation; and

- Article 6: Obligation to guarantee to investors the free transfer of their investments and returns.

60. As a result of these violations of the BIT, Lone Star has suffered billions of euros in damages. Lone Star fully reserves the right to elaborate and expand on these claims.

61.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1 of the BIT, Lone Star stands ready to settle this dispute amicably and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serious, good faith discussions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As is made clear above, Lone Star has already exerted significant effort to prevent and resolve its dispute with Korea, but without success. Absent resolution of this dispute within six months through appropriate measures and compensation to Lone St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of the BIT, Lone Star will submit this dispute for arbitration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론스타와 대한민국 분쟁 관련 적요서

론스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SPRL
BE 0811.214.166
Boulevard de la Plaine, 9
B-1050 IXELLES
2012년 5월 21일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가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귀하

대통령 각하,
한국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벨기에 투자사를 대표하여 편지를 드립니다. 이들 투자사는 LSF-KEB 홀딩스 SCA, 스타홀딩스 SCA, HL 홀딩스 SCA, LSF SLF 홀딩스 SCA, 극동홀딩스 1 SCA, 극동홀딩스 II SCA(본 서신과 첨부 문서에서는 "론스타"로 총칭) 등 총 6개사입니다. 이들 벨기에 투자사는 한국외환은행(외환은행) 지분 64.62%를 비롯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분 역량을 실질적이고 심각하게 저해하고, 론스타와 론스타 직원을 계속 괴롭히고, 벨기에와 체결한 양자 간 조세 조약을 위반하며, 부당하고 임의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등 론스타와 관련하여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그 결과 론스타는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맹 간의 투자 상호 증진 및 보호 협정(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하에서 벨기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한국 측의 의무에 위배된 것입니다. 론스타는 2008년 7월 9일, 2009년 2월 11일, 2012년 1월 17일 한국금융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들 위반 사례를 여러 차례 알렸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론스타의 한국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조약 위반 사례를 설명하는 자세한 적요서와 더불어 분쟁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여기 제출합니다. 론스타는 이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임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론스타는 중재를 요청하는 일 없이 이번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내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이번 분쟁의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D. 톰슨 이사

첨부: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분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맹 간의 투자 상호 증진 및 보호 협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적요서

참조: 김성호 주 벨기에 및 유럽 연합 대사 대행
김대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분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맹 간의 투자 상호 증진 및 보호 협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적요서

Ⅰ. 개요

1. 본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맹 간의 투자 상호 증진 및 보호 협정(이하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1항에서 요구한 상세 적요서로 2012년 5월 21일, 6개 론스타 기업(이하 '론스타' 또는 '론스타 기업')이 대한민국정부에 제기한 분쟁 통지에 첨부된다.

2.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한국 규제 당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제삼자에게 론스타가 보유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기간 론스타는 일련의 잠재 인수자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협상을 진행했으나 규제 당국이 인수자의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2012년 마침내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를 승인했을 때는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해 론스타에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 기간 한국 규제 당국은 법적 권한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잠재 인수자의 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보다는 매각자인 론스타가 얻을 수익에 분노한 여론을 달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행동했다.

3. 이 기간 한국 국세청도 한국 국내법과 벨기에 및 다른 국가와의 조세 조약에 규정된 의무에 반해 임의로 론스타에 조세를 부과했다. 규제 당국은 또 다시 적절한 조세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면세 혜택에 분노한 여론을 달래는데 급급했다. 그로 인해 규제 당국은 적법성 또는 이전 조치와의 일관성은 무시한 채 론스타의 조세 의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만을 무조건 적용했다.

4.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규제 및 사법 당국은 계속해서 론스타 직원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체포, 조사, 감사해왔다.

5. 한국 측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론스타는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벨기에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

6. 본 적요서에서 론스타는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및 쓰러져가는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계열사 외환신용카드와 외환은행 합병, (2) 론스타의 지속적인 외환은행 지분 매각 노력 및 이 기간 한국의 권리 침해 및 임의적 조치, (3) 한국이 론스타에 부과한 임의적이고 모순된 조세 부과, (4)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 소송 제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Ⅱ. 외환은행 인수 및 외환신용카드 구제

A. 외환은행 원시취득

7. 론스타는 2003년 당시 규모 면에서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컸지만 불량 채권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와 파산 위험에 놓여 있던 외환은행에 투자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위기로 여러 대형 금융 기관이 파산했거나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외환은행도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외환은행의 주요 주주였던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의 자본을 확충할 의지나 역량이 없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쓰러져가는 은행을 긴급 구제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내외 어떤 은행도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막대한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의 쓰러져가는 대형 은행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론스타뿐이었다.

8. 한국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외환은행의 성공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고

론스타의 투자로 많은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외환은행의 제2주주였던 한국수출입은행(32.5%의 지분 소유)과 한국은행(10.67%의 지분 소유)은 국영기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미 상당량의 공공 자금이 외환은행에 투입된 상태였고 은행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이들 공공자금을 회수할 가능성 또한 불확실했다. 외환은행이 파산하면 여러 재벌과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화로 이미 약해진 금융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져 한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론스타는 1조 75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1,660억 원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은행에 투자한 공공자금을 회수하고 한국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지원했다.

9.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 기관으로 되돌릴 준비가 됐었다. 그러나 한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 상업 은행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2002년 4월 27일 개정된 「은행법」(Bank Act)은 잠재 인수자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경우에만 금감위에서 매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었다).

10.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과 관련하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시작하고 바로 금감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3년 9월 26일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외주 51% 매입 신청과 더불어 론스타의 의결권지분 포함 65.23% 내에서 코메르츠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권을 승인했다.

11. 2003년 10월 30일 론스타는 1조 3,830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했다. 이후 제기된 주장과는 달리 론스타는 "급매 가격"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다. 사실 론스타는 투자 협의 기간의 상장 가격과 비교해 13%의 프리미엄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전체 실사를 시작했을 때인 2003년 3월 기준 주가와 비교해 55%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론스타는 2006년 5월 11일 금감위에 필요한 취득 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 5월 30일 콜옵션을 행사하여

7,740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 14.1%를 추가 매입했다. 즉, 해당 시점에 론스타는 총 2조 2,000억 원 가량을 외환은행에 투자했다.

B. 외환은행에 외환신용카드 합병

12. 론스타는 초기 외환은행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 실사 및 협상 단계에서 외환신용카드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확인했다. 외환은행은 외환신용카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외환신용카드를 구제하느라 외환은행마저 위기에 빠뜨리는 것보다 외환신용카드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직후 한국 규제 당국은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를 구제하지 않으면 외환은행과 주요 주주에게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외환은행이 향후 신용카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 20일 당국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요 주주의 외환신용카드 지분을 매입한 다음 외환신용카드를 합병했다.

III. 론스타 반대 여론과 정치권 분위기에 따른 한국 규제 당국의 임의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13. 론스타는 다른 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때 한국의 대형 금융 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자본을 제공하고, 한국 규제 기관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외환은행의 쓰러져가는 자회사인 신용카드회사에 추가 자본을 투자했지만 한국 여론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 특히 론스타를 이내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론스타는 한국에 투자하여 창출할 수익으로 인해 순식간에 한국 여론의 공격을 받았다. 한국 여론은 한국 자산을 매입해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금방 매각하는 외국 자본을 뜻하는 "먹튀"로 론스타를 불렀다.

14. 한국 여론은 론스타의 수익을 없애거나 줄이도록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응했다. 아래 설명했듯이 한국 규제 당국은 론스타가 공정한 시장 가격에 외환은행 투자 지분을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법성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수단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여론과 정부는 은행이 위기에 있을 때 론스타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외환은행(및 외환신용카드)을 구제했으며 은행과 신용카드 사업의 재정 상태를 크게 회복시켰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또한, 론스타가 은행을 구제함으로써 한국 금융 서비스 산업과 전반적인 경제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는 점도 무시했다.

15. 2012년 마침내 외환은행 지분 매매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론스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은 계속됐다. 이 기간 론스타는 많은 정부 감사와 조사, 과도한 과세를 비롯해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직원들도 괴롭힘과 체포, 제재, 심지어 구금 등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론스타는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입었다.

A.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실패 및 관련 괴롭힘

16. 2006년 초 외환은행이 수익성을 회복한 이후 론스타는 다각도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위법적으로 매각 승인을 보류하여 론스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 금감위는 론스타와 관련하여 여러 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론스타와 관련된 혐의 중 인수자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신청 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만한 것은 없었다.

17. 한국 국내법은 상업 은행의 상당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규제 당국은 인수자의 자격과 조건과 대상 자회사만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각자의 문제로 인해 인수자의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금감위의 권한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이는 론스타가 많은 이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재정 수익을 올렸을 경우 발생할 여론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했다. 여론은 금감위에 론스타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외

환은행 지배 지분 매각을 금지하라고(또는 최소한 매각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고 금감위는 매각 승인을 거부하여 여론을 달래려고 했다.

18. 한국 국내법은 금감위가 30일 내에 인수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제19조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원래 심사 기간 이내로 심사 기간을 연장(즉, 30일 이내)할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의 경우 승인 신청 심사를 1년 이상 유보해 일련의 매각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19. 금감위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 신청에 대해 다른 투자자의 다른 금융 기관 매입 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사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기간에 발생했던 다른 은행 매각 승인 신청은 한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모두 60일 이내에 처리됐다.

20. 금감위의 심사 유보로 인해 론스타는 투자를 처분할 권리를 반복해서 박탈당했다. 아래 설명했듯이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외환은행 지분 매매 승인이 떨어졌지만 이전에 협상했을 때보다 이미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한 후였다.

I. 국민은행에 매각 시도

21. 론스타는 2006년 1월 처음으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이때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관리하에 재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다. 주식 가격은 240% 상승했고, 자본 순가치는 1조 8,380억 원(2003년 6월 30일 기준)에서 5조 6,580억 원(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BIC)비율 또한 9.32%(2003 회계연도 기준)에서 13.68%(2005 회계연도 기준)로 높아졌다. 론스타는 이러한 회계상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2006년 5월 19일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64.62%를 6조 3,000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2006년 5월 말 금감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2. 그러나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인한 론스타의 수익 창출에 여론이 반발하자 한국 정부는 론스타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6년 3월 3일 국회의 요청으로 감사원에서 진행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원시취득 감사, 2005년 9월 14일 외국인 투자 반대 그룹(투기자본감시센터)과 2006년 3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요청으로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론스타의 범죄 수사, 금감위 집행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조사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 외환은행, 론스타가 잘못해서 론스타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상당량의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했다는 주장에 의거한다.

23. 정부 당국은 이러한 혐의를 키우기 위해 집중 조사, 체포 영장 청구, 무거운 형량 구형 등으로 주요 론스타 직원을 괴롭혔다. 2006년 10월 31일부터 대검찰청은 유회원 전(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LSAK)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그리고 외환신용카드 합병 당시 론스타에서 임명한 외환은행 이사였던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등 세 명에 대해 체포 영장(조사를 위해)을 여러 번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여론에 영합하여 심사를 계속 유보하는 동안 대검찰청은 전례 없이 2006년 11월 6일 다수의 한국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서울중앙법원의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대검찰청의 소송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던 이사를 포함해 외한신용카드 합병을 승인했지만 론스타와 관계없는 외환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24. 론스타와 론스타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조사가 국민은행의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지분 매입 자격 심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이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민은행의 승인 신청서 심사를 유보하고 결국 승인을 거부했다.

2. DBS 은행에 매각 시도

25. 2006년 11월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협상이 결렬된 후, 론스타는 2007년 1월 싱가포르의 DBS 은행(DBS)과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재빨리 DBS에게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DBS는 외환은행 지분 매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26. DBS와의 협상이 결렬된 시기에 금감위는 여론의 압박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었다는 초기 해석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2003년 당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므로 외환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까지 포함해 론스타의 자격을 재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3. 공개 시장에서 외환은행 지분 블록세일

27. 이 기간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관리하에 꾸준히 수익이 늘어나고 안정되어갔다. 그럼에도 가까운 미래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 없다는 금감위의 공식 입장으로 인해 론스타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 이러한 공식 입장과 두 번의 매각 협상 결렬로 론스타가 다른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 따라서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론스타는 2007년 6월 22일 공개 시장에서 1조 2,000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했다. 블록세일은 단일 인수자가 외환은행 지분 상당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배 블록을 판매할 때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실제로 당시 매각 가격은 공식 상장된 주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4. HSBC에 매각 시도

28. 블록세일 이후 론스타는 HSBC 아시아퍼시픽홀딩스 UK(HSBC)와 매매협상을 시작해 2007년 9월 3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약 6조 원에 매각하

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12월 17일 HSBC는 금감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를 방해했다.

29. HSBC가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는 감사원과 대검찰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원시취득과 관련해 론스타 또는 론스타의 대표자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조사를 마친 후였지만 금감위는 여전히 HSBC의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았다. 지적했듯이 법적으로 금감위는 인수자(즉, HSBC)의 자격만 심사할 수 있지만 금감위는 다시 한 번 매각자인 론스타와 관련된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 금감위는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과 관련된 유회원 씨의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법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HSBC의 승인 신청서 심사가 유보되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2월 1일 금감위는 모든 법적 소송이 해결되기 전에는 HSBC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국내법에는 이러한 이유로 승인을 유보할 법적 또는 규제 기준이 없다.

30. 금감위의 이러한 조치는 법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전광우 금감위 원장은 2008년 6월 5일 HSBC의 승인 신청서를 심사할 때 "여론을 고려해야"하며, 기존의 입장을 바꿔 HSBC의 신청서를 심사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이나 국민적 합의는 은행 지분 매입 승인 신청 심사를 유보 또는 거부할 법적 기반이 아니다.

31. 론스타는 2008년 7월과 9월 사이 전광우 금감위 원장에게 일련의 서신을 보내 HSBC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승인 신청 심사를 촉구하고 HSBC의 승인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투자 협정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HSBC의 승인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고, 신청서를 제출한지 9개월 후인 2008년 9월 18일 HSBC와의 주식매매계약은 파기됐다.

5.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32.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론스타는 네 번째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1년 가까이 세계 시장에서 인수자를 찾아 헤맨 끝에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와 4조 7,000억 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매매계약은 계약 종료까지 넉넉하게 6개월의 기간을 두었고 하나금융은 2010년 12월 13일 금감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33. 한국 반독점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 9일 매각 승인을 발표했다. 그 사이 금감위는 3월 16일 회의를 열어 비금융주력자로서의 론스타의 자격과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해 금감위가 신청서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그러나 3월 10일, 2년 반 동안이나 항소 사건을 보류 중이던 대법원이 갑자기 유회원 씨의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리고 3월 16일 열린 회의에서 금감위는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2003년 결정을 재확인했지만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34. 금감위는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구금에 대한 비난 여론을 빌미로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 심사를 유보했다. 「은행법」 제16조 제4항 제3호와 폐지된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제215조에 따라 금감위는 지난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주주에게 6개월 이하의 정해진 기간 내에 외환은행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 합병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하는 경우 금감위는 10%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었다. 표면상 금감위는 이러한 이유로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서 심사를 유보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상당량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을 론스타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구실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의 이러한 설명은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35. 금감위의 승인 신청 심사를 기다리던 중 2011년 7월 8일 론스타와 하나

금융은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 제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36. 2011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신용카드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법원의 판결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투자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 신청서를 처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인정했다. 따라서 론스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2011년 10월 14일 해당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되었다. 론스타는 일련의 서신을 통해 금감위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은행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소송이 끝나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 심사를 가로막던 장애물도 사라졌으니 매각 명령에 의지할 필요 없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요 주주라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서를 승인하는 것이 현 시점에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반에서 론스타는 금감위에 매각을 조속히 승인하도록 촉구했다.

37. 그러나 금감위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으라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론스타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재협상하도록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이 종료되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승인을 유보했다. 실제로 금감위는 매매 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하나금융의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8. 2011년 10월 17일, 금감위는 론스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을 기반으로 론스타가 「은행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충족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왔다. 물론 론스타는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최종 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이것이 금감위의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한 론스타는 현재 유보 중인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2011년 10월 25일 충족명령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이 공식 명령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제외한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론스타는 충족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즉시 통보하고 하나금융의 승인 신청서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으로 재촉구했다.

39. 거의 한 달 후인 2011년 11월 18일 금감위는 2012년 5월 18일까지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제외한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처분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론스타는 지난 1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계약까지 체결한 하나금융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다량의 주식을 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명령에 직면하게 됐다.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론스타가 금감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같은 날, 금감위는 거의 1년 전 하나금융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하나금융에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할 것으로 명령했다. 금감위는 초과지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박탈을 이러한 변화의 예로 들었다. 이 언론 발표에 대한 금감위의 공식 설명을 보면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가격 하락을 기대한 것이 분명했다.

40. 하나금융은 금감위의 발표에 힘입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면서 상당한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실질적인 잠재 인수자 없이 얼마 남지 않은 처분 명령 이행 종료일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가격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론스타는 2011년 12월 3일 원래 4조 7,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매매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나금융은 인하된 가격 협상을 토대로 2011년[1] 12월 5일 금감위에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다.

41. 그러나 매매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분위기로 인해 금감위는 두 번째 신청서도 심사를 유보했다. 하나금융이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간의

1) 국외자료과 주: 원문에는 2012년 1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2011년이 맞는 것 같음.

법정 기간이 끝난 후 거의 2주가 지난 2012년 1월 17일 론스타는 금감위에 다시 서신을 보내 하나금융의 매입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충족명령과 처분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알렸다. 금감위는 2012년 1월 27일 드디어 하나금융의 신청을 승인했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2011년 12월 3일 합의한 가격에 2012년 2월 9일 거래를 완료했다.

B. 국세청의 임의적 단적인 세무 감사 및 과세

42.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벨기에와의 조세조약(한・벨기에 조세조약)에 위반되는 조세를 반복적으로 부과했다. 점점 적대적이 되어가는 한국 여론을 달래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고 벨기에 기업으로서 론스타 기업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조세 혜택을 무시함으로써 론스타의 납세 의무를 극대화했다.

43. 한・벨기에 조세조약하에서 벨기에 기업은 한국 기업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벨기에만 이에 대해 독점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약에서는 투자 유치국에서 과세 권리를 양도하고 거주국에서 과세 권리를 보유하는 이러한 조세 규정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이고 론스타는 부당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입증되지 않았고 설득력도 없는 혐의를 토대로 국세청은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신 벨기에 기업이 아닌 "사실상" 비(非)벨기에 투자자 수준의 조세를 부과했다.

44. 또한, 아래 자세히 논의한 대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세청은 단지 세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론스타의 한국 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 모순된 입장을 취해왔다. 론스타가 한국에 일정한 장소(고정사업장)를 두고 여기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했을 때 한국에서의 과세가 극대화되는 경우, 국세청은 론스타가 한국에 이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여러 번의 매매거래 과정에서 국세청은 처음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세청이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결론지은 경우에도 국세청은 적용할 수 있는 조세조약을 무시하고 한국 국내법만을 토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원천징수했다.

45.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분쟁은 국세청이 영장이나 LSAK의 동의 없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LSAK 서울 사무소를 불시 급습하여 론스타를 감사한 2005년 4월부터 시작됐다. LSAK는 한국의 다양한 론스타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개별 기업으로, 론스타 기업에서 LSAK를 소유 또는 경영한 적이 없었다. 국세청의 불시 급습은 론스타가 사무실건물 스타타워를 소유했던 한국기업인 스타타워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자 여론의 적대감에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국세청은 해당 사건과 관계없어서 론스타와 국세청이 이미 감사 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합의한 회사의 기밀 정보도 불시 급습해서 불법적으로 압수해갔다.

46. 2005년 10월부터 국세청은 사실상 론스타의 모든 한국 투자와 사업에 대해 막대한 조세를 부과하고 다양한 론스타 계열사와 직원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스타타워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1,12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스타타워기업은 벨기에 법에 따라 조직된 론스타 투자 홀딩 기업인 스타홀딩스 SCA에서 소유한 회사였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지분 매각자 또는 "양도인"이 벨기에인일 경우 한국은 한국기업의 지분 매각에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스타홀딩스 SCA는 스타타워기업 지분의 실제 수익 소유자가 아니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아래 언급했듯이 벨기에는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약에 규정된 대로 양국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47. 국세청은 스타홀딩스 SCA가 스타타워기업 지분의 매각자 또는 "양도인"

이 아니고 최종 투자자, 즉 스타홀딩스 SCA를 간접 소유한 미국과 버뮤다 파트너십의 투자자가 스타타워기업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단순히 미국과 버뮤다 파트너십에 조세를 부과했다. 이는 그른 결정이었지만 설혹 옳았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들 수익의 상당 부분은 면세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해당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한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른 주장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스타타워에 간접 투자한 미국과 버뮤다 파트너십에 조세를 부과했다. 이는 분명 그른 결정이었지만 설혹 옳다고 하더라도, 비(非)한국 파트너십에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해당 펀드 파트너십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48. 또한, 국세청은 법인세 제도보다 세율이 높은 개인 소득세 제도에 따라 이들 기업에 조세를 부과했다. 한국 법원에서 몇 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한 끝에 한국 대법원은 2012년 1월 국세청의 다른 주장이 모두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에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론스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국세청은 부과했던 세금을 환급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법인세 제도에 따라 조세를 다시 부과한 다음 다시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환급을 적용했다. 이와 같이 론스타는 7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 한국 법정에서 다시 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49. 설명했듯이 국세청은 한국 국내법과 적용할 수 있는 조세조약에 따라 펀드 파트너십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세 제도에 따라) 이들 조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불과 2년 후에 스타타워와 사실상 형태가 동일했던 론스타의 경우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50. 2007년 론스타와 제휴한 5개 벨기에 홀딩사는 다음 3개 한국 기업 지분

을 매각했다. (i) LSF-외환은행 홀딩스에서 소유한 외환은행 지분 13.6% 블록세일(III.A.3 참조), (ii) 스타리스의 LSF SLF 홀딩스 SCA와 HL 홀딩스 SCA에서 소유한 지분 매각, (iii) 극동건설의 극동 홀딩스 I SCA 및 극동 홀딩스 II SCA에서 소유한 지분 매각. 이들 한국기업의 소유권 구조는 스타타워기업의 소유권 구조와 흡사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국세청은 스타타워기업 매각에 적용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적용하여 이들 매각에 총 1,530억 원의 조세를 부과했다.

51. 2007년 지분 매각이 이뤄진 3개 한국 기업 중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기업은 없었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이 이들 3건의 매매에 조세를 부과하려면 스타타워기업의 경우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해당 방식도 옳지 않음)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스타타워 매매의 경우처럼 3건의 매매에 참여한 론스타 기업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짓는다면 매각 수익의 상당 부분은 한국 정부의 조세 대상이 아닌 조세조약(벨기에 또는 최종 펀드 투자자의 거주국과 체결한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해당 매각에 한국 조세를 부과했다.

52. 이번에 국세청은 지분을 매각한 각 벨기에 기업은 무시하고 한국에 있는 한국 자산 관리 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HAK)와 LSAK 직원의 기업 활동을 빌미로 업스트림 투자자인 미국과 버뮤다 파트너십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매각 수입 일부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했듯이 외환은행, 스타리스, 극동 매매 거래에서 론스타 기업의 소유권 구조는 불과 2년 전에 국세청이 업스트림 투자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정했던 스타타워기업 매매 거래에서의 기업 구조와 유사하다. 이들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국세청은 적법성이나 이전 입장과의 일관성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많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

53. 벨기에는 2007년 8월 8일 한국의 한·벨기에 조세조약 위반과 관련해 조

세조약 24조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스타홀딩스 SCA 거래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07년 9월 27일 조약 위반에 관한 벨기에의 상호 합의 절차 제안은 물론 벨기에 정부와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54.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 2월 론스타는 마침내 상당량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시 새로운 과세 방식을 적용했다. 금감위가 매각을 승인하기 전에도 국세청은 론스타에 지불할 매매가격에서 자본이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나금융에 명령했다. 한국 국내법하에서 원천징수는 매각자가 고정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및 적용가능한 조세조약에서 원천징수를 제외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세청이 외환은행 지분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하여 하나금융에 원천징수를 명령한 것은 론스타의 2007년 블록세일 경우와는 정반대로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 것을 의미했다. 국세청은 또한 한·벨기에 조세조약하에서 2012년 매각 수익은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무시했다(또는 최종 투자자의 거주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이들 최종 펀드 투자자가 이들 투자의 "실제" 납세자라는 국세청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수용). 국세청이 되도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또 다시 이전과 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55. 국세청의 명령에 따라 하나금융은 매각 수익에서 4,310억 원을 원천 징수해 2012년 3월 5일과 2012년 3월 7일 서울지방국세청과 남대문 세무서에 각각 납부했다.

56. 요약하자면, 국세청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서 보장하는 벨기에 주주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동시에 론스타에 가능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투자별, 시기별로 실질적인 입장을 바꿔가면서 론스타의 한국 투자에 대해 총 8,0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IV.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하에서 제기된 클레임

57.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 정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규정한 론스타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 론스타는 2008년 7월 9일, 2009년 2월 11일, 2012년 1월 17일 금감위 보낸 서신과 구두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러한 위반 사례를 여러 차례 알렸다.

58. 론스타는 여기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상세 적요서와 분쟁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59. 이번 분쟁에서 투자자는 벨기에 기업 LSF-외환은행 홀딩스 SCA와 스타 홀딩스 SCA, HL 홀딩스 SCA, LSF SLF 홀딩스 SCA, 극동 홀딩스 I SCA, 극동 홀딩스 II SCA이다. 이들 투자자는 외환은행 지분 64.62%를 비롯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투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이들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위반했다.

- 제2조 제2항: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보안 의무
- 제2조 제3항: 임시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의한 투자의 운영, 관리, 유지, 사용, 보유, 처분 방해 금지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한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 및 한국인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률과 동일하게 대우할 의무
- 제5조: 보상이 없는 몰수 금지
- 제6조: 투자 및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자유 거래 보장 의무

60. 이러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으로 인해 론스타는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론스타는 이를 자세히 설명할 권리를 보유한다.

61.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론스타는 이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선의에 따라 신중하게 한국 정부와 이를 논의하기를 바란다. 앞서 분명히 설명했듯이 이미 론스타는 한국과의 분쟁을

막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6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통해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이번 분쟁의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기록